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고 선 강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황 인 자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고선강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황 인 자

인 준 서

황인자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10월

심사위원장 김 주 희 (인)

심 사 위 원 어 성 연 (인)

심 사 위 원 조 윤 주 (인)

심 사 위 원 백 선 아 (인)

심 사 위 원 고 선 강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진행하였다.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변인들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결혼의향은 조사대상자의 결혼의향 인식 수준에 대해 측정하였다. 개인 관련 변인 중 경제자원은 월평균 소득과 자산총액을 측정하였고, 부모 관련 변인으로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 도구를 구성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측정하였다. 직무만족도는 김혜영·선보영·김상돈(2010)이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근무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가족친화조직문화는 Tomson, Beauvais와 Lyness(1999)가 개발한 도구 중 방묘진(2004)의 연구에서 선택한 총 1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혼지원정책필요성은 김혜영·선보영·김상돈(2010)의 결혼지원정책 도구와 박주희(2017)의 도구에 ‘제 3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에서 제시한 정책을 추가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은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미혼직장인 15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 관련 변인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는 성별, 연령, 교육기간, 자산총액, 부채유무로 나타났다. 부모 관련 변인에서는 부모경제수준과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직장 관련 변인에서는 고용형태와 직무만족도, 가족친화조직문화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자금주택정책필요성과 결혼준비정책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4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 관련 변인에서 성별과 연령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부모 관련 변인에서는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관련 변인에서 가족친화조직문화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정책 관련 변인에서는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가장 큰 정적 영향력으로 나타났고, 일자리정책필요성은 부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개인 관련 변인과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영향력의 순위를 살펴보면, 자금주택정책필요성, 일자리정책필요성,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 가족친화조직문화, 성별, 자산총액의 순으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지원정책 중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자리정책필요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주택 및 결혼비용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을 높게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직장의 조직문화가 가족친화적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혼직장인 여자에 비해 미혼직장인 남자의 결혼의향이 더 높고, 미혼직장인 중 본인의 자산총액이 적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별과 연령대를 구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서 미혼직장인남성의 결혼의향에 가장 큰 영향력으로 나타난 변인은 자금주택정책필요성으로 밝혀졌고,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 일자리정책필요성, 자산총액 순으로 영향력이 유의미하였다. 미혼직장인여성의 결혼의향에 가장 큰 영향력으로 나타난 변인은 자금주택정책필요성으로 밝혀졌고, 일자리정책필요성과 부채유무의 순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직장인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결혼의향에 가장 큰 영향력으로 나타난 변인이 자금주택정책필요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미혼직장인의 연령대별 결혼의향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 미혼직장인의 경우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어서 일자리정책필요성, 결혼준비정책필요성, 부채유무의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30대 미혼직장인의 경우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고, 다음으로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어서 고용형태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40대 이상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 모두 개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정책 관련 변인에서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과 직장의 가족친화조직문화도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시행중인 결혼지원정책을 재검토하여 미혼층의 결혼의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지원과 주거지원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부모로부터 주택결혼비용을 지원 받지 않아도 경제적 자립기반을 형성하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규직 의무 고용비율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직장의 가족친화조직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주제어 : 결혼의향, 부모의 지원, 가족친화조직문화, 결혼지원정책필요성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9
1. 관련 이론	9
1) 생태학적 체계이론	9
2. 선행연구고찰	14
1) 개인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	14
2) 부모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	22
3) 직장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	26
4) 정책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	31
III. 연구방법	33
1.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33
1) 연구문제	33
2) 연구모형	34
2. 변수의 정의	35
1) 종속변수.....	35
(1) 결혼의향	35
2) 독립변수	35
(1) 개인 관련 변인	35

(2) 부모 관련 변인	36
(3) 직장 관련 변인	37
(4) 정책 관련 변인	39
3. 자료수집	45
4. 자료 분석 방법	46
5.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47
IV. 연구 결과 및 해석	52
1.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52
1) 개인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52
2) 부모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54
3) 직장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58
4)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59
2.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과 결 혼의향의 관계	62
3. 성별과 연령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Two-way ANOVA)	64

4.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6
1)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위계적 회귀분석	66
2) 성별에 따른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74
3) 연령에 따른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77
V. 결론 및 제언	81
참고문헌	91
ABSTRACT	98
부록	103

표 목 차

<표Ⅱ-1>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결혼의향	20
<표Ⅱ-2>경제자원과 결혼의향 관계 주요 연구.....	21
<표Ⅱ-3>부모의 경제자원, 경제적 지원과 결혼의향 관계 주요 연구	25
<표Ⅱ-4>고용 형태, 직종, 직무만족도와 결혼의향 관계 주요 연구	29
<표Ⅱ-5>가족친화조직문화와 결혼의향 관계 주요 연구	30
<표Ⅱ-6>결혼지원정책과 결혼의향 관계 주요 연구	32
<표Ⅲ-1>변수의 정의와 측정도구	42
<표Ⅲ-2>연구변인의 기술통계	49
<표Ⅳ-1>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56
<표Ⅳ-2>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61
<표Ⅳ-3>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63
<표Ⅳ-4>성별과 연령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Two-way ANOVA)	65
<표Ⅳ-5>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73
<표Ⅳ-6>성별에 따른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75
<표Ⅳ-7>연령에 따른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78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34
<그림 2> 미혼직장인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65

I. 서론

우리 사회는 청년층의 결혼과 관련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결혼의 양적 측면의 변화로 혼인 건수의 하락과 초혼 연령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혼인 건수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에 329,087건이었던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에는 257,622건으로 21.7%p 감소하였다. 평균 초혼 연령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2008년 남성은 31.4세, 여성은 28.3세와 비교하여 2018년 남성은 33.2세, 여성은 30.4세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9).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는데, 결혼을 성인기의 통과의례로 생각했던 과거 세대와 달리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최근 10년 사이 급격히 하락하여, 2008년 조사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남성은 76%, 여성은 63%에서, 2018년 남성의 52.8%, 여성의 43.5%로 나타났다(정기선, 2009; 통계청, 2018).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크루트, 두잇서베이, 2017)에서도 직장인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하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직장인들 사이에 더 우세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청년층은 결혼을 더 이상 생애과정에서 당연히 이행하는 규범이 아니며,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민자, 2004).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결혼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왕석순·전주람·류경희, 2015), 미혼층의 혼인 건수 하락은 생산노동공급, 소비, 인구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며, 잠재성장을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김성준, 2015).

미혼층의 가치관 변화를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따르면, 출생 후 성장 과정에서 직·간

접적으로 경험하는 역사적·사회문화적 사건들이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호트¹⁾(同期集團, cohort : 일정 기간 중에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라는 의미를 적용하여 세대의 특성을 살펴볼 경우, 이 집단은 출생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생애 주기의 동일한 단계에서 역사적 사건을 비슷한 방식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특성을 지닌 코호트 세대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가치관과 생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김기연·신수진·최혜경, 2003). 특정 세대의 인식 및 가치는 평면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사회의 역사적 구조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고(이삼식, 2006), 특정한 시기에 함께 출생하는 코호트는 생애 주기의 동일한 발달단계에서 사회적·역사적 사건을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김기연·신수진·최혜경, 2003). 결혼과 연관된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결혼이전 생애과정은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남자의 경우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을 경험한 사람의 결혼할 가능성이 정상적인 생애과정 경험자보다 낮게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생애과정 경험자의 결혼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은기수, 1999).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연령대인 2019년 기준, 20대~40대 미혼직장인은, 1970년부터 201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애성장과정에서, 시대적 상황의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의 영향을 받으며 결혼가치관, 직업가치관이 변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20세인 미혼직장인은 1999년에 출생했고, 2019년 40세는 1979년, 49세는 1970년에 출생했다. 1970년대는 국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형성되지 못해 빈곤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고, 1980년대는 정치적 혼란기로 부모세대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1997년 12월 3일~2001년 8월 23일)와 글로벌 금융위기(2007년~

1) 세대사회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행동양식 등을 공유하는(경험하는) 집단, 특정한 역사적 경험에 의한 사회화 과정을 거친 연령 집단을 의미한다(베이비부머세대, 386세대 등).

2008년)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켰다. 이러한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시대 상황의 영향으로, 부모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어린시기부터 빈곤의 고통을 경험한 미혼직장인이 있고, 본인이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 경험하면서 성장한 경우도 있다.

20대~40대 세대의 미혼자들은 성장발달과정 중에 겪게 된 경험의 영향으로, 전통적 결혼가치관에 대한 수용 수준이 하락하게 되었고, 직업선택에 대한 관념도 변화하였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 미혼남녀(20세~44세)의 전통적 결혼 가치규범 수용 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2015년에 비해 2018년 미혼남녀의 비혼화와 만혼화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밝혀졌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청년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진입했던 부모세대와 달리, 안정적인 직종 진입을 위해,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약 44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이들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대상으로 주목되기도 한다(김향덕·이대중, 2018). 또한 미혼자의 취업선택도는 첫 번째 일자리의 규모, 주 평균 근무 시간, 월평균 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드러났다(유홍준·박은선·오계택·김월화, 2016).

현시대 미혼층들은 가치관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학업과 취업, 결혼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로 인한 부담, 불안정한 고용 상태, 불안정적인 주거환경 등이 어려움의 요인이다. 학령기가 길어지면서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을 받아야 하는 미혼층이 있고, 학령기 이후부터 상환 부담감이 크다. 또한 미혼층의 학력수준은 높아졌지만 국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원하는 직종 취업이 어려워, 청년실업률이 2012년 7.5%에서 2017년 9.8%까지 상승했다(고용노동부, 2018; 통계청, 2018).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이 구직자와 맞지 않는 미스매치의 상황이 청년의 경제적 자립 가능 시기를 늦추는 주요인으로 밝혀졌는데(김기식·박선나, 2018),

20대~30대의 중졸과 고졸 학력 청년의 고용상황은 더욱 열악하고, 대졸 이상의 청년들도 원하는 직종 진입이 어려워, 실업-구직-취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30대 후반에 비해 20대 전반의 청년들이 청년수당에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현재보다 청년지원정책의 확대를 제안했다(김영미, 2018). 결혼 이행을 위한 결혼결정 요인에서 임시직 비율의 상승과 실업률 상승, 주택가격종합지수가 미혼층의 결혼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이상호·이상현, 2010), 학령기에 받은 학자금대출도 결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배호중·한창근, 2018).

고학력화, 불안정한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부족 등의 요인으로, 성인기에 진입하더라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미혼층이 증가하고 있고, 결혼시기에 신혼집 마련과 결혼비용을 부모로부터 지원 받는 미혼층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조사결과, 성인남녀 1,061명 중 56.1%가 스스로 켄거루족이라고 표현했다. 20대 응답자의 59.3%, 30대 응답자의 43.8%가 켄거루족으로 인식했는데,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오호영, 2017). 결혼시기에 결혼비용과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미혼층들이 있는데, 결혼비용을 지원 받는 비율은 여성이 75.5%, 남성이 68.3%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혼집 마련을 위한 부모의 지원 현황은, 여성 24.3%, 남성이 70.5%로, 남성이 신혼집 마련을 위해 지원받는 비율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았다(김영란·장혜경·이윤석, 2018).

직장에서 부여되는 과중한 업무 부담, 장시간 근로 관행, 위계적 문화와 경직된 조직문화가 미혼직장인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세~44세의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결혼생활과 직장 업무 양립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또한 직장인 미혼남녀들 가운데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감

과 잦은 야근,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인크루트, 두잇서베이, 2017). 2016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장시간 근로가 ‘관행’으로 만연화 되어 있다(김근주, 2018). 전문직 미혼여성들은 직장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에너지와 시간 부족을 경험하여 이성교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만혼 유발의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어성연·조희금·고선강, 2010). 또한 직장인 미혼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계속 직업을 갖고 일을 하기를 희망하지만, 직장 업무와 가사 병행이 어렵다고 호소했고(이윤석, 2008), 직장여성의 경력단절의 주요인으로 결혼과 가사, 양육으로 조사되었다(김경아, 2016). 미혼직장인 여성은 야간 근무 또는 주말 근무를 비롯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회사 업무를 더 하게 될 경우, 1년 이내에 결혼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회사에서 시차출퇴근제도가 시행될 경우, 결혼할 확률이 증가했는데, 재택 근무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결혼할 확률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신재우, 2018).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도가 존재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제도의 활용이 여의치 않은 근로자들이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직장인 기혼 여성의 55%정도가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 비율이 높았고, 사무직, 상용근로자,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 민간대기업 종사자의 이용률은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사회연구원, 2018).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혼인 건수와 저출산 문제의 연관성을 감지하여 국가 차원의 결혼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2006-2010)’에서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를 강조하였다. ‘제 2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2011-2015)’은 ‘가족 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결혼 장려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와 관련 교육 정책 등이 도입되었다. 현재 시행중인 ‘제 3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1)’에서는 제 1 차와 제 2 차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성찰하고,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를 제시하고, 노동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일자리의 질 제고, ‘청년 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혼인 건수가 하락하면서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의향’ 관련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진행되었다. 그런데 결혼의향 관련 연구의 대다수는 일반적인 미혼남녀(고선강, 2013; 김정석, 2006; 김중백, 2013; 임선영·박주희, 2014; 탁현우, 2017; 한영선, 2015)를 주요 대상으로 하거나, 대학생(박주희, 2016), 청년층(주희정·김민석, 2018) 및 결혼적령기 청년(최필선·민인식, 2015)을 조사대상자로 지목하여 진행한 연구들이고, 미혼직장인을 연구대상자로 정하여 진행된 결혼의향 관련 연구는 소수로 밝혀졌다(박주희, 2017; 조진영, 2016). 일반적인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와 대학생 대상 연구, 소수의 취업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본인의 소득 등 경제자원과 결혼의향 관계(원아름, 2015; 이정은, 2017; 박주희, 2017)를 파악한 연구가 있고, 가구소득과 결혼의향(김중백, 2013; 김혜영·선보영, 2011), 경제적 배경(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부채)과 결혼의향(김정석, 2006; 주희정·김민석, 2018)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부모의 자원제공 변인과 결혼의향(박혜민, 2017; 조진영, 2016; 한영선, 2015; 홍은영, 2011), 가족친화제도와 결혼의향(고선강, 2016; 진달래, 2013), 결혼지원정책과 결혼의향(김혜영·선보영, 2011; 박주희, 2017; 박혜민, 2017; 이정은, 2017; 진달래, 2013)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들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심 있는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미혼직장인과 연관된 다차원적 환경 변인들과 결혼의향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워, 직장

생활 관련 변인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혼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 관련 변인과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변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가족생태이론에 기초한 미혼 남녀의 결혼관과 관련 변인’ 연구(김예리, 2008)가 진행되었지만, 조사대상자가 미혼남녀이고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자기명확성, 심리적 독립심, 이성교제 변인을 미시체계로 제시하였다. 중간체계는 부모자녀관계, 가족건강성, 부모의 부부관계인지 중 부부갈등정도, 외체계로 가족관련 정책 인지도 및 필요성, 일-가정 양립 태도, 거시체계로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의 다양성 수용도, 이혼에 대한 태도, 혼전 성의식을 구성하여 조사했는데,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주의 가치관, 부모관계 특성과 미혼자의 결혼의향 관계 연구는, 부모의 지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원하는 것, 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을 조사하고 결혼의향과의 관계를 연구하였고(조진영, 201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지연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탁현우, 2017)에서는 일반적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결혼지원정책과 결혼의향 관계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김혜영·선보영, 2011)는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직접적지원정책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했는데, 미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제 3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추가로 도입된 결혼지원정책이 발표되기 전의 연구로서,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이 분석에 투입될 수 없었다.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일부 존재하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다양한 환경 체계 요인들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므로,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통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미혼직장인의 경제자원을

비롯한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박혜민, 2017)에서 부모의 결혼자금지원 수용과 결혼 의향에 대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는 미혼직장인의 직장생활과 결혼 의향과의 관계를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개인변인, 가족 변인, 제도변인, 사회문화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통합적 연구(이정은, 2017)가 있지만, 만20세~44세 연령의 미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여부는 측정했지만, 결혼과 연관되는 주택결혼비용지원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직장 관련 변인을 투입하지 않았다. 직무만족도가 높은 여성의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난 연구가 존재하지만 소수이기 때문에(김혜영·선보영, 2011), 미혼직장인의 직장생활과 결혼의향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미진하다. 또한 가족친화조직문화와 미혼자의 결혼의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혜영·선보영, 2011; 진달래, 2013; 탁현우, 2017)가 존재하지만, 미혼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혼지원정책필요성 수준과 결혼의향의 관계 연구(이정은, 2017)도 있는데, 미혼여성으로 한정되어, 미혼 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접목하여, 미혼직장인의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부모 관련 변인, 중간체계인 직장 관련 변인, 거시체계인 정책 관련 변인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적 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관련 이론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유기체로서의 한 인간이, 자신이 자라온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그러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개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관련되는 다차원적 환경 체계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과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생태학적 체계이론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체계이론과 생태학적 개념을 통합한 이론으로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론이다. 인간과 환경의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 상호작용의 과정인 적응과 진화 과정을 통해 인간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며,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총체적 인간관을 지향한다. 체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란, 유기체가 인접 환경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보, 에너지, 자원의 교환을 의미한다. 인간과 환경은 분리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상호교환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형성하며 상호적응하는 호혜적 관계(reciprocal relationship)를 유지한다고 본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개인과 환경간의 적합성, 상호교류,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에 대한 포괄적인 실천지식을 제공한다(권중돈·김동배, 2005).

체계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작용하는 각각의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 즉, 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련의 단위들로 정의된다. 체계는 정보, 에너지, 자원 등을 교환하면서 역동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이다. 체계의 특성은 체계의 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 규정한 안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항상성). 체계의 유형은 다른 체계와 에너지, 정보, 자원 등을 상호 교류하는 유형의 개방체계와, 다른 외부 체계들과 상호교류가 없거나 교류가 불가능한 유형의 폐쇄체계로 구분된다(손병덕·성문주·백은령·이은미·최은화·정정호·송현아, 2017).

생태학(ecology)은 생물과 환경이 더 큰 전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 된다고 가정하고 “생태학은 유기적이든 비유기적이든 간에 환경과 유기체²⁾나 생물 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인간생태학은 인간(개인, 집단, 그리고 사회)과 환경의 상호작용 및 상호의존과 관련된다(유계숙·최연실·성미애, 2003).

Urie Bronfenbrenner(1979)는 인간의 발달과정을 분석하면서 체계론적 관점을 확대하여 ‘생태적 체계(Ecological Systems)’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성장하는 유기체와, 유기체가 실제 거주하고 성장 및 변화하는 환경 간에, 일생 동안 일어나는 조절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광범위한 접근법인 ‘인간발달 생태학이론(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을 제시했다. 인간을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유기체로 보고,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연구는 맥락 내(development-in-context)의 인간발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은혜, 2015).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

2) 개별적이고 통제를 받는 살아있는 체계이다. 살아있는 체계는 물질- 에너지외 정보를 요구하고 일정한 환경 내에서만 생존할 수 있고 자기규율적이다. 가족, 조직, 사회는 바로 살아있는 체계의 보기이다. 그들은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다(부가적인 인간생태학의 개념, p449)

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시간체계(chronosystem)로 구분하고, 각각의 환경체계가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허창덕, 2012). Bronfenbrenner(1979)는 생태학적 환경 내에서의 개인의 위치 변화는 발달과정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다고 했다(유계숙·최연실·성미애, 2003). 인간은 성장·발달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접환경과, 차별화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미시체계는 생태학적 환경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체계로 친밀한 사회 환경과 직접 접촉하는 물리적 환경 안에서 경험하는 상황으로, 가족, 이웃, 학교, 이웃 등이 해당한다. 개인에게 미시체계(microsystem)는 가장 직접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으로 가족이 해당되며 생애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경제수준과 경제적 지원은 생애주기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수준에 따른 주거환경은 영유아기부터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육의 기회와 연관되며,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과 결혼의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간체계(mesosystem)는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혹은 특정한 시점에서 미시체계들, 환경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생인 경우 학교와 부모와의 관계로, 부모의 학교 참여가 해당되고,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로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의 수준과 아동과의 관계가 해당되며, 직장인 가정과의 관계가 해당된다. 미혼직장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근무환경은 중간체계로서 직장인의 가정생활만족수준과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이 자유로운 조직문화일수록 근로자의 일-가족 조화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유계숙, 2008). 이 결과는 직장인 가족친화적일수록 일-가정갈등수준이 낮아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요인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간체계인 직장 관련 변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외체계(외부체계, exosystem)는 중간체계가 확장된 것으로 부모의 직장, 정부, 사회복지기관, 대중매체 등과 같이 개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지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를 의미한다. 아동에게 있어서 부모의 직장과 정부, 사회복지기관, 대중매체 등과 같이 개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지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를 의미한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아동의 생활패턴이 달라지는 것이 외체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 아동의 부모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수준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외체계의 영향이다. 직장의 복지서비스 수준이 높을 경우,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정서적인 문제 발생 수준이 낮게 되고, 가족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된다.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에 포함된 모든 요소에 정치, 경제, 종교, 교육, 윤리와 가치, 신념, 관습, 규범, 문화, 정책 등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이념 및 제도의 일반적인 형태를 포함하는 환경적 요소로서 정책 등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이 해당한다. 개인의 삶에 간접적이지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거시체계의 시대정신이나 풍토는 유기체의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ronfenbrenner.U, 1993; 이은혜, 2015; 재인용). 결혼지원정책과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거시체계로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결혼지원정책 만족도와 필요성 동의 여부, 자녀출산 및 양육정책 필요성 동의수준과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주희, 2017; 이정은, 2017). 본 연구에서는 거시체계 변인으로 결혼지원정책인 자금주택정책필요성과 일자리정책필요성, 결혼준비정책필요성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시간체계(chronosystem)는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역사적 환경을 포함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의식과 대인관계가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되는 상황과 연관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을 초등학교 때 경험하는 아동과 대학생 때 경험하는 상황이 스트레스 수준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결혼과 관련하여 미혼자의 결혼이전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적인 생애과정을 거친 미혼남성의 결혼가능성이,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을 경험한 사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혼여성은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을 경험한 사람이 오히려 정상적인 생애과정을 경험한 사람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은기수, 1999). 본 연구의 대상자인 미혼직장인이 성장·발달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이 성인기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령기 때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정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성장할 경우,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고,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 환경 내의 다차원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고, 행동 유발 요인의 맥락에 대한 심층적 고찰도 필요하다.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생태학적 체계이론으로 접근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고찰

본 절에서는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와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본 연구와 동일한 변수나 척도가 제시된 연구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연구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해 기술한다.

1) 개인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

(1) 성별

선행연구에서 성별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반적인 통계적 수치에서 미혼남성이 미혼여성보다 결혼의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소영·강시은·엄세원·박지수·이재립, 2017; 고선강·어성연, 2013; 김중백, 2013; 김정석, 2006; 박주희, 2017; 박혜민, 2017; 조진영, 2016; 홍은영, 2011). 가족배경,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가치관 조건이 같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도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김중백, 2013). 결혼에 대한 안정감, 행복, 사랑 등 긍정적인 정서로부터 결혼의향을 가지는 정도인 ‘정서적 결혼의향’과, 결혼은 반드시 필요한 것,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결혼의향을 가지는 정도인 ‘당위적 결혼의향’, 결혼이 가져다주는 기능적인 측면(경제적 안정, 합법적 성생활, 부모에게 효도, 독립, 자녀 출산 등)으로부터 결혼의향을 가지는 정도인 ‘기능적 결혼의향’에서 남성의 결혼의향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박혜민, 2017).

(2) 연령

미혼남녀의 연령은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지만,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혼남녀의 연령이 낮을수록(어릴수록) 결혼의향이 있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선강·어성연, 2013; 김정석, 2006; 김중백, 2013; 김혜영, 2011; 서정연, 2018; 서지희, 2009; 원아름·박정윤, 2016; 원아름, 2015; 이정은, 2017; 이삼식, 2006; 이지나·황명진, 2019; 진달래, 2013; 탁현우, 2017). 특히 주 혼인층인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은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미혼여성과 미혼남성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선강·어성연, 2013). 연령의 효과는 여성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여성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적어지는 것으로 밝혀졌고(김정석, 2006),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결혼에 대해 부정적 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이삼식, 2006). 연령은 여성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도 있다(진달래, 2013).

한편 연령이 증가하면서 미혼남성과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이 상반된 영향력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고, 일정 시점 이후 결혼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도 존재한다. 남성은 연령이 높아도 결혼의향이 낮아지지 않는 경향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어성연·조희금·고선강, 2010). 남성 청년층은 35세에서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 확률이 가장 높고, 36세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청년층은 33세에서 결혼이행 확률이 가장 높고 이후로는 결혼이행 확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필선·민인식, 2015).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이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가 있고(한영선, 2015), 25세~29세까지 결혼의향이 상승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도 있다(홍은영, 2011).

한편 미혼남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결혼의향과 결혼이행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존재한다. 연령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혼남녀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았고(김은정, 2018; 임선영·박주희, 2014), 여성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결혼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희정·김민석, 2018).

(3) 교육기간

미혼남녀의 교육수준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관적이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혼자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결혼의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권소영·강시은·엄세원·박지수·이재림, 2017; 김정석, 2006; 이삼식, 2006; 이정은, 2017; 한영선, 2015)들이 존재한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미혼여성이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진 연구도 존재한다(김혜영·선보영, 2011). 남성의 교육수준이 결혼이행 확률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교육수준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기도 한다(최필선·민인식, 2015). 교육변수가 남성에게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미혼직장인 남성은 고졸학력보다 전문대졸업 수준이 증가할 때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대학 졸업자보다 4년제 대학과 대학원 졸업 등 수준이 증가할 때 결혼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진달래, 2013).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가 미혼남성에게서만 유의미하게 나타

났는데, 교육수준이 증가할 때마다 결혼의향이 높아져 학력과 결혼의향은 정적 상관관계로 밝혀졌다(홍은영, 2011).

(4) 월평균소득, 자산총액, 부채유무

미혼남녀의 경제자원과 결혼의향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고 소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혼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고, 미혼여성 또는 미혼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의향 및 결혼의지와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소수 존재한다. 연구 결과 미혼남녀의 경제자원 관련 변인은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 중 30대 미혼남녀 668명의 경제자원(가구소득, 주택보유, 개인근로소득)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개인근로소득은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데,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고선강·어성연, 2013). 개인근로소득 ‘상’에 속하는 미혼여성들은 ‘중’, ‘하’수준에 속하는 집단에 비해 결혼의향을 갖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남성들은 개인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결혼의향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혼남녀의 월 소득과 월평균가구소득, 금융자산은 결혼의향과 자발적 결혼연기, 결혼기피, 결혼지연과 관련이 높은 요인으로 꼽힌다. 29세 이상~44세 이하의 여성 미혼·기혼 총 1,500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김혜영·선보영·김상돈, 2010)에서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은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낮은 집단의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취업미혼남녀 300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박주희, 2017)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근무조건을 고려했을 때, 취업미혼남녀의 월 소득이 높을수

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도 존재한다(이정은, 2017).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이상 미혼남녀 300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임선영·박주희, 2014)에서,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집단이 그 이하 집단보다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미혼남녀 207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조진영, 2016)에서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 집단이 미만인 집단보다 결혼의향이 높았다.

미혼남녀는 소득이 상승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고, 개인의 금융자산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관적이지 않고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지연 영향 요인에 대해 진행한 연구(탁현우, 2017)에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도 증가하였다. 서울·경기 직장인 미혼남녀 만 20세~44세 385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진달래, 2013)에서 금융자산 하위권에 속하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패널(youth panel) 1차-7차 데이터로 결혼적령기 청년의 결혼이행 사건에 대해 분석한 연구(최필선·민인식, 2015)에서 취업 남성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결혼 이행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재정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 영향을 연구한 결과 여성의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결혼이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주휘정·김민석, 2018)

본인의 월평균소득, 부채 유무 등 미혼남녀의 경제자원 현황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도 존재한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미혼남녀 264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미혼남녀의 부채유무와 결혼의향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김정석, 2006)에서 개인부채유무는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성교제중인 20세 이상 미혼남녀 411명

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월평균 소득과 결혼의향과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원아름, 2015). 재정패널 6차년도~9차년도의 데이터 중 만 19세부터 만 39세 1,642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주희정·김민석, 2018)에서 남성은 가구의 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 부채와 가구주의 근로 여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여성도 가구배경 경제적 요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결혼의향 주요 연구

구분	변수	연구 결과	연구자
개인 관련 변인	성별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선강 외(2013), 권소영 외(2017), 김중백(2013), 김정석(2006), 박주희(2017), 박혜민(2017), 조진영(2016), 홍은영(2011)
		미혼자 중 결혼이행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휘정 외(2018)
	연령	미혼남녀의 연령이 낮을수록(어릴수록) 결혼의향 있을(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혼남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늙을수록) 결혼의향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고선강 외(2013), 김정석(2006), 김혜영 외(2011), 서정연(2018), 원아름 외(2016), 이삼식(2006), 이정은(2017), 진달래(2013), 탁현우(2017), 홍은영(2011)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져도 결혼의향 낮아지지 않은 반면, 여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 낮아짐	어성연 외(2010)
		연령이 높을수록 비혼 의향 높아짐	김한곤(2018)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미혼여성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결혼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영선(2015)
		미혼남녀 연령 높을수록 결혼의향 높음 청년층 나이 많을수록 결혼이행 가능성 높임	임선영 외(2014) 주휘정 외(2018)
		혼인적령기 있다고 인식하는 집단 결혼의향 높음 남성 청년층 35세 결혼이행 확률 가장 높고, 여성 청년층 33세 결혼이행 확률 가장 높음, 이후 남녀모두 낮아짐	박혜민(2017) 최필선 외(2015)
		교육 수준	미혼여성, 청년남녀 교육수준 높을 경우 결혼의향도 높아짐
	미혼남성의 교육수준 높아질 경우 결혼의향 높아짐		김정석(2006), 진달래(2013), 홍은영(2011)
	교육수준 낮은 미혼여성 결혼의향 높음		김혜영 외(2011)
	교육수준과 미혼여성 결혼의향 무관함		김정석(2006), 홍은영(2011)
	4년제 대졸 이상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낮은 결혼의향 나타남		김중백(2013)

<표Ⅱ-2> 경제자원과 결혼의향 관계 주요 연구

연구자	대상자	연구 방법	변수		연구 결과
			독립변수 통계변수 최도	종속변수	
고선강· 어성연 (2013)	미혼남녀 (30세-39세)	이항로지 스틱회귀 분석	개인 근로소득 (월평균소득, 사업소득)	결혼의향 있다 없다	·개인근로소득 높은 미혼남성 결혼 의향 긍정적 영향, 개인근로소득 높은 미혼여성 부적영향 ·개인근로소득 높은 미혼여성의 경 우 결혼의향 갖지 않을 확률 높음
김혜영 외(2011)	미혼·기혼	상관관계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소득수준 가구월평균 소득	결혼의향 있다 없다	소득수준이 높은 미혼여성 결혼의 향 긍정적으로 나타남
박주희 (2017)	취업 미혼남녀	위계적 회귀분석	월 소득	결혼의향 1점-5점	월 소득 높은 취업미혼남녀 결혼 의향 높음
원아름 (2015)	이성교제중 인 20세 이상 미혼남녀	이항로지 스틱회귀 분석	가정의 월평균소득	결혼의향 유, 무	월 평균 소득과 결혼의향과의 관 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음
이정은 (2017)	미혼여성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개인소득수준	결혼의향 있다, 없다	소득수준 높은 미혼여성 결혼의향 높음
임선영· 박주희 (2014)	미혼남녀	위계적 회귀분석	월 소득	결혼의향 1점-5점	월 소득 높은 집단의 결혼의향 높 음
조진영 (2016)	직장인 미혼남녀	다중회귀 분석	월 소득	결혼의향 1점-5점	월 소득 높은 집단 결혼의향 높게 나타남
주희정· 김민석 (2018)	만 19세-39세 미혼청년층	로지스틱 회귀분석	경제적 배경(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부채) 자가주택보유 지출가능 금액	결혼이행 미혼 결혼	소득이 많은 여성과 가구 부채 많 은 여성 결혼이행 가능성 떨어짐 남성 자가 주택 보유 결혼이행 높 음,
진달래 (2013)	미혼남녀	로지스틱 회귀분석	금융자산	결혼의향 있다 없다	금융자산 수준 높은 미혼남녀 결 혼의향 높음
최필선· 민인식 (2015)	결혼적령기 청년	로지스틱 회귀분석	입금	결혼이행 있다 없다	취업남성 입금 높을수록 결혼 이 행 확률 높음
탁현우 (2017)	미혼남녀	로지스틱 회귀분석	월평균 소득	결혼의향 있다 없다	미혼남녀 소득 높을 때 결혼의향 증가함

2) 부모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

(1) 부모 경제 변인, 거주현황과 결혼의향

부모의 경제적 자원 변인 중 금융자산이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세-49세의 미혼여성들을 조사대상으로, 미혼여성의 일자리 특성과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한영선, 2015)결과 부모의 경제적 자원 변수 가운데, 부모의 부동산 자산과 소득, 기타자산은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모의 금융자산만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부모의 금융자산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만 19세부터 만 39세 1,642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주희정·김민석, 2018) 결과, 남성은 가구의 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 부채와 가구주의 근로 여부가 모두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여성도 가구배경 경제적 요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부모와 동거여부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취업미혼여성이 비동거 취업미혼여성에 비해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지희, 2010). 미혼성인의 부모의존 변인과 결혼의향 영향 연구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결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홍은영, 2011). 또한 부모동거 미혼여성이 1인 가구 미혼여성보다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혜, 2014). 반면, 독립가구를 형성하여 사는 미혼여성들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여성들에 비해, 자유롭고 경제적 기반이 있을 경우에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밝혀진 연구도 존재한다(김정석, 2006).

(2)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결혼의향

부모의 경제자원, 자녀에게 지원되는 자원 제공이 미혼자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양상은 일관적이지 않다.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남녀 총 742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청년 여성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소영·강시은·엄세원·박지수·이재림, 2017). 미혼남녀 553명을 대상으로 부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를 분석한(박혜민, 2017)결과, 부모의 결혼자금지원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결혼이 가져다주는 기능적인 측면인, 경제적 안정, 합법적 성생활, 부모에게 효도 또는 독립하는 법, 자녀 출산 등으로부터 결혼의향을 가지는 정도인 기능적 결혼의향과, 결혼에 대한 안정감, 행복, 사랑 등 긍정적인 정서로부터 결혼의향을 가지는 정도인 정서적 결혼의향, 결혼은 반드시 필요한 것,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결혼의향 가지는 정도인 당위적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부모의 결혼자금지원 수용 인식이 높은 경우 미혼남녀의 기능적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혜민·전귀연, 2018). 미혼자의 부모의 자원 제공 요소와 결혼의향 관련 연구에서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제공이 많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임선영·박주희, 2014). 30대 직장인 미혼남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는 미혼남녀 집단의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조진영, 2016), 미혼여성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수준이 증가할 때, 결혼의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진달래, 2013).

부모의 경제자원, 자녀에게 지원되는 자원 제공 빈도와 제공 수준이 미혼 자녀의 결혼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존재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이전이 증가할 때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진달래, 2013). 부모가 한 명 이상 생존한 만 20~29세의 남녀 774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박지수·이재림, 2016)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 빈도가 청년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자녀에 대한 진로기대를 통해 결혼의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적 지원을 자주 받은 청년이 부모의 진로기대를 높게 인식하고, 이 요인이 청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영향을 미쳐 결혼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5세 이상~35세 이하 미혼남녀의 결혼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경제적 자원제공을 많이 받을 경우 결혼의지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정연, 2018). 20세 이상~44세 이하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향 및 태도와 부모의존의 관계에 대한 연구(홍은영, 2011)에서, 미혼남성은 부모로부터 50%이상 지원 받을 때 결혼 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미혼여성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정도가 많을 때, 결혼의향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경제상황과 자원이전이 미혼자녀의 결혼의향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가 있다.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지원의 효과’에 대한 연구(고선강·어성연, 2013)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 20세~44세의 미혼여성 1,287명을 대상으로 결혼의향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이정은, 2017)한 결과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은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4세의 미혼자의 결혼이행 의향의 차이 조절요인에 대한 연구(김중백, 2013)에서 부모의 재정지원 여부는 결혼의향에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3> 부모의 경제자원, 경제적 지원과 결혼의향 관계 주요 연구

연구자	대상자	연구방법	변수		연구 결과
			독립변수 통제변수 최도	종속변수	
고선강· 여성연 (2013)	30대 미혼남녀	이항로지스 틱회귀분석	부모의 경제적 지원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결혼의향 있다, 없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결혼의향 에 영향 미치지 않음
권소영 외(2017)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남녀	순위로지스 틱회귀분석	부모의 경제적 지원 (1년 동안 경제적 지원 '생활비, 용돈, 등록금, 주거비) 1점-8점	결혼의향 1점-5점	청년 여성 부모가 성인자녀에 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결혼의향 높음
김중백 (2013)	만20-44세 미혼자	이항로지스 틱회귀분석	부모의 경제적 지원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결혼의향 있다, 없다	부모의 경제적(재정) 지원 여부 결혼의향 설명하지 못함
박지수· 이재림 (2016)	부모 한 명 이상 생존한 20대	PROCESS macro에서 직렬다중 매개	부모의 경제적 지원 빈도(1년간 경제적 지원 '생활비, 용돈, 등록금, 주거비'으로 지원받은 빈도 1-8점)	결혼의향 1점-5점	부모의 경제적 지원 빈도 자 녀에 대한 진로기대를 통해 청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의향도 낮 아짐
박혜민· 전귀연 (2018)	대구지역 미혼남녀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	부모의 결혼자금지원 수용 인식 있다, 없다	결혼의향 1점-5점	부모의 결혼자금지원 수용 의향 미혼남녀의 기능적 결혼의향 높음
서정연 (2018)	25세-35세 이하 미혼남녀	다중회귀 분석	부모의 도구적, 정서적 경제적, 자원제공	결혼의향 1점-5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 많이 받는 미혼남녀 결혼의향 약함
이정은 (2017)	만20-44세 미혼여성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부모로부터 지원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 지원, 비지원	결혼의향 있다, 없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결혼 의향에 영향 미치지 않음
임선영· 박주희 (2014)	30대 이상 미혼남녀	위계적 회귀분석	부모의 자원 제공(용돈, 복돈지원)	결혼의향 1점-5점	경제적 자원 제공 많을수록 결혼의향 높음
조진영 (2016)	30대 직장인 미혼남녀	다중회귀 분석	부모관계 특성 (경제적 지원)	결혼의향 1점-5점	부모의 경제적 지원 많이 받 는 집단 결혼의향 높음
진달래 (2013)	미혼남녀 직장인	로지스틱회 귀분석	부모의 경제자원 이전 (경제적 도움주고 있는지 여부)	결혼의향 있다, 없다	·부모에게 자원이전 받는 미혼남성 결혼의향 낮음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 증 가 미혼여성 결혼의향 높아짐
한영선 (2015)	15세-49세 미혼여성	패널로짓 모형 합동모형과 랜덤효과 모형	부모의 경제적 자원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기타자산)	결혼의향 있음, 없음	·부모의 경제적 자원 변수 중 부모의 금융자산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력 을 나타냄 ·부모 금융자산 한 단위 증가 할수록 미혼여성 결혼의향 가능성 높아짐
홍은영 (2011)	20세 - 44세 미혼남녀	이분형로지 스틱회귀분 석,교차분석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정도(전적으로 받음,, 50%이상, 50%미만, 전혀 받지 않음)	결혼의향 있다, 없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정도 많 을 때 미혼여성 결혼의향 감 소 ·부모의 경제적 지원정도 미 혼남성 결혼의향에 영향력 유 의미 하지 않음

3) 직장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

(1) 고용형태, 근무 직종, 직무만족도와 결혼의향

미혼남녀의 고용형태, 직종, 직무만족도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혼남녀의 고용형태에서 정규직인 경우가 비정규직보다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직종과 근무시간과 결혼의향은 다른 양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30대 미혼남녀의 취업과 정규직 여부를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 30대 미혼남녀 모두 취업 여부는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규직 여부는 미혼남녀 모두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선강·어성연, 2013). 미혼여성이 종사하는 직종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전업주부, 기타/무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김혜영·선보영, 2011) 결과 결혼의향은 응답자의 직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블루칼라 집단에 비해 화이트칼라 집단의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미혼남성의 경우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주희, 2017)가 있고, 비정규직인 경우 정규직보다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존재한다(탁현우, 2017). 박혜민(2017)의 연구에서 정규직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활동상태를 무직, 임시직/일용직,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기타로 구분하여 측정한 연구(서정연, 2018)에서 전문직 종사 미혼남녀가 다른 경제활동상태 종사하는 미혼남녀에 비해 결혼의지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판매직과 생산직이 관리·전문직, 무직보다 결혼의향이 더 높았다. 결혼 이행 영향력 요인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정규직으로 일할수록 결혼 이행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드러났다(주희정·김민석, 2018). 취업의 질을 측정하였는데(상용직, 임시직, 자영업 및 기타, 임금 등), 남성의

경우 임시직일 경우 결혼이행 사건 발생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존재한다(최필선·민인식, 2015).

미혼여성은 직종 관련 변인에서 관리전문가, 사무종사자 여성 집단이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사상의 지위에서는 상용직인 미혼여성 집단이 일용직에 비해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취업여성이 비정규직 취업여성보다 결혼의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한영선, 2015). 직무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의향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선보영, 2011).

(2) 기업의 조직문화와 결혼의향

미혼직장인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조직문화와 결혼의향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있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다(김혜영·선보영, 2011; 어성연·조희금·고선강, 2010; 진달래, 2013). 28세 이상 40세 이하의 전문직 미혼남녀 14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으로 만혼현상에 대해 진행된 연구(어성연·조희금·고선강, 2010)결과 전문직 미혼여성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출산 시 휴직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출산휴가 사용 시 직장에서 도태될까 걱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직장에서 본인에게 부여되는 과도한 업무가 에너지와 시간 등 자원고갈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성교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부정적 영향은 남성 전문직보다 여성 전문직 미혼여성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쳐 만혼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 직장에서 여성들도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는데, 여성들의 직업 몰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규정하고,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해 여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전문직 미혼남성

의 의견에서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탁현우, 2017)에서, 일·가정 갈등은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과 결혼과 직장생활 병행 어려움 등에 대해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비혼 이유는 결혼시기와 연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성의 비혼 이유 중 결혼으로 인한 부담, 일·가정갈등으로 인한 결혼기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갈등은 비혼 이유 중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장환경 요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여성의 경우 휴일형태 변인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하였는데, 토·일 휴무집단의 결혼의향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진달래, 2013).

남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영향의 비율로 보면 출산지원제도, 유연근무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인식 순으로 드러났다. 출산지원제도 인지 정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결혼의향이 증가하였고, 유연근무제도인지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결혼의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및 가족문화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미혼여성들은 결혼을 고려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선보영, 2011). 또한 미혼여성들 중 결혼 후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고,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결혼의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취지향적인 성향으로 직장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게 느끼는 경우, 결혼을 함으로써 만족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거나, 결혼이행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기회비용들이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부양가족지원제도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결혼의향이 감소하여 부양가족지원제도 인식과 결혼의향이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진달래, 2013).

<표 II-4> 고용 형태, 직종, 직무만족도와 결혼의향 관계 주요 연구

연구자	대상자	연구 방법	변수		연구 결과
			독립변수, 통제변수, 척도	종속변수	
고선강 (2013)	미혼남녀 (30세-39세)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정규직 정규직 외	결혼의향 있다, 없다	·정규직 여부 결혼의향 영향 나타나지 않음
김혜영·선보영 (2011)	미혼·기혼	상관관계분석 로지스틱회귀 분석	직종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분류 직무만족도	결혼의향 있다, 없다	·화이트 칼라 집단이 블루칼라 계층에 비해 결혼의향 높음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의향이 크지 않음
박주희 (2017)	취업 미혼남녀	위계적 회귀분석	정규직 근무기간	결혼의향 1점-5점	정규직이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결혼의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영선 2015	15세-49세 미혼여성	패널로짓 모형 합동모형과 랜덤효과 모형	정규직 여부 상용직 여부 관리전문가 사무종사자	결혼의향 유, 무	정규직, 상용직 미혼여성 결혼의향 높고, 관리전문가 사무종사자 여성 결혼의향 높음
서정연 (2018)	25세 이상-35세 이하 미혼남녀	다중회귀분석	무직, 임시직/일용직,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 기타로 구분측정	결혼의향	전문직 종사 미혼남녀가 다른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미혼남녀에 비해 결혼의지가 강해지는 것
박혜민 (2017)	직장인 미혼남녀	다중회귀분석	정규직 여부 서비스 판매직 관리전문직	결혼의향 1점-5점	·정규직 취업자 결혼의향 높음 ·서비스·판매직이 관리·전문직 무직보다 결혼의향 높음
주희정·김민석 (2018)	만 19세-39세 미혼청년 층	로지스틱회귀 분석	정규직, 비정규직	결혼이행 미혼 결혼	정규직 남녀 결혼이행 가능성 높음
최필선·민인식 2015	15세-29세 청년층	로지스틱회귀 분석	고용 임시직, 상용직	결혼이행 있다 없다	미혼남성 취업의 질(상용직) 결혼가능성 높아짐
탁현우 (2017)	미혼남녀	로지스틱회귀 분석	정규직 비정규직	결혼의향 있다, 없다	미혼남성 정규직 결혼의향 높음

<표 II -5> 가족친화조직문화와 결혼의향 관계 주요 연구

연구자	대상자	연구방법	변수		영향력
			독립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	
김혜영· 신보영 (2011)	미혼여성	상관관계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혼지원정책 일·가정양립 부정적 인식 직장만족도	결혼의향 있다, 없다	·연령 낮고 소득 수준 높을수록 직장-가정 양립 위한 기업 및 가족문화 개선 제공 시 결혼 고려 의사 높음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의향 크지 않음
어성연· 조희금· 고선강 (2010)	28세 이상 40세 이하 전문직 미혼남녀	질적연구 (포커스그룹 인터뷰)			·전문직여성: 이성교제기회 부족 가장 큰 결혼지연 요인으로 인식, 장기간 출산휴가 등 사용 시 직장에서 도태될까 걱정, 직장 내 과도한 업무 자원고갈 유발 이성교제에 부정적 영향, ·전문직남성: 이성교제부족 겪지 않고 확대 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찬성하지만 미래의 배우자는 가사 및 육아 등에 집중 가능한 임시직이나 프리랜서 원함, 여성의 직장업무 몰입 당연시하지만 가사와 육아 관련 내용은 자유롭게 규정
진달래 (2013)	만 20-44세 미혼남녀	로지스틱 회귀분석	부양가족지원 제도인식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결혼의향 있다, 없다	·부양가족제도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결혼의향 가질 승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휴일형태 변인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력 나타남 ·남성-출산지원제도, 유연근무제, 부양가족지원제도 인식 순으로 결혼의향에 영향력 미침
탁현우 (2017)	미혼남녀	로지스틱 회귀분석	일·가정 갈등	결혼의향, 결혼지연	·일·가정 갈등이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4) 정책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 주요 연구

국가에서 추진하는 결혼지원정책의 세부 내용이 미혼층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준비 유급휴가제도, 신혼부부주택마련지원, 결혼자금융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미혼층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선보영, 2011). 서울시 및 수도권 거주 취업미혼남녀 300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결혼지원정책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행된 연구(박주희, 2017)에서 간접적 결혼지원 정책(결혼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이성간의 만남의 장 제공,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직접적 결혼지원정책(신혼부부주택마련지원, 결혼준비를 위한 유급휴가제도, 결혼자금융자, 직장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및 가족문화 개선)으로 결혼지원정책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신혼부부주택마련지원 등 결혼지원정책의 직접적 정책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구지역 미혼남녀의 당위적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인식 변인으로 결혼정보제공 정책의 유용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혜민, 2017). 또한 국가의 결혼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할수록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진 연구(이정은, 2017)가 있고, 미혼직장인의 결혼장려 관련 정책의 효율성 인식 수준이 결혼의향에 크게 영향을 미쳐, 결혼장려 관련정책 효율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진달래, 2013). 현시대의 결혼지원정책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가족생태이론에 기초한 미혼 남녀의 결혼관 관련 변인 연구(김예리, 2008)에서는 가족관련 정책 인지도 및 필요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관련 정책(결혼생활을 지원하는 가족생활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결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 -6> 결혼지원정책과 결혼의향 관계 주요 연구

연구자	대상자	연구방법	변수		연구 결과
			독립변수 통제변수 척도	종속변수	
김예리 (2008)	미혼남녀	상관관계 분석 중다 회귀분석	가족관련정책 인지도 및 필요성	결혼관 (결혼의 동기, 태도, 인식)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관련 정책(결혼생활을 지원하는 가 족생활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고 느낄수록 결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김혜영· 선보영 (2011)	미혼· 기혼남녀	상관관계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혼지원정책	결혼의향 있다, 없다	결혼준비 유급휴가제도, 신혼 부부주택마련지원, 결혼자금 융자 등 실질적인 지원이 결 혼의향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남
박주희 (2017)	수도권 거주 취업미혼남녀	위계적 회귀분석	결혼지원정책 만족도	결혼의향 1점-5점	신혼부부주택마련지원 등 직접적 지원정책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 높음
박혜민 (2017)	대구지역 미혼남녀	다중회귀 분석	결혼정보제공 유용성 인식 정도	결혼의향 1점-5점	결혼정보제공 정책의 유용성 높게 인식할수록, 당위적 결혼의향 높게 나타남
이정은 (2017)	만 20-44세 미혼여성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혼지원정책 필요성 인식, 동의	결혼의향 있다, 없다	결혼지원정책 필요성에 동의 할수록 결혼의향 긍정적인 영 향
진달래 (2013)	서울경기 직장인 미혼남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혼장려 관련정책 효율성	결혼의향 있다, 없다	결혼장려 관련정책 효율성 인 식 수준 높아질수록 결혼의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를 연구한다. 둘째,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의 관계를 연구한다. 셋째,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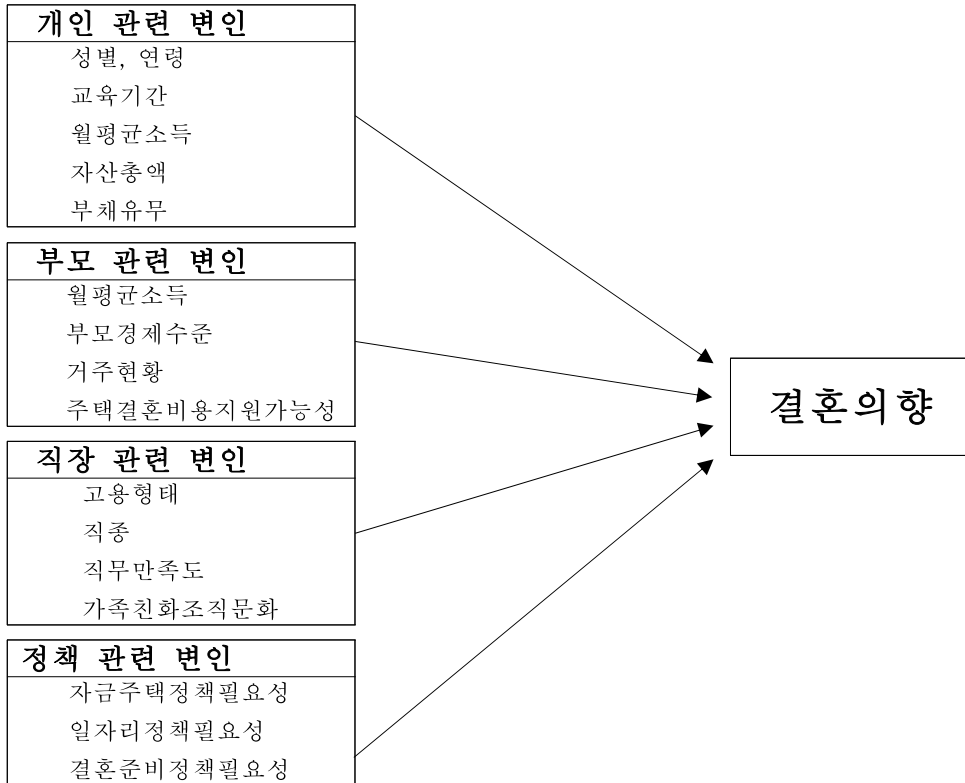
[연구문제 2]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1] 성별에 따른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2] 연령에 따른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1) 결혼의향

본 연구에서 ‘결혼의향’은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결혼을 선택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생각 및 관념’으로 정의한다.

종속변수인 결혼의향은 총 1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귀하는 결혼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로 질문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더 긍정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1) 개인 관련 변인

① 성별, 연령, 교육기간

성별은 여자(1), 남자(2)로 코딩하여 구분하였다. 연령은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여 만 나이를 조사하였다. 분산분석에는 ‘20대’, ‘30대’,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교육기간은 공교육을 받은 기간으로 조사하였는데, 예를 들면, 중학교 졸업자는 9년, 고등학교 졸업자는 12년으로 측정된다. 분산분석에는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이상’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성별은 가변수로, 교육기간과 연령은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② 월평균소득, 자산총액, 부채유무

연구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은 최근 3개월 월평균 근로소득(세금 공제 이적 금액)을 조사하였다. 자산총액은 조사대상자에게 금융자산(주식 펀드, 적금 보험 연금 예금 등)금액과 부동산 자산(주택, 토지 등)금액, 기타자산(자동차 등)금액을 각각 조사한 후, 세 가지 유형의 자산 액수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부채유무는 부채가 있다고 답한 경우 1로, 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구분하였다. 회귀분석에 월평균소득은 자연로그를 취하여 투입하였고, 자산총액은 제곱근을 취하여 투입하였다.

(2) 부모 관련 변인

① 부모월평균소득

부모월평균소득은 조사대상자 부모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정부지원, 자녀의 생활비 지원 등 포함)에 대해 총액이 얼마인지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조사하였다. 기술통계를 위해 부모월평균소득을 4분위로 나누어 '0~250만원'(25%=1), '251만원~400만원'(50%=2), '401만원~500만원'(75%=3), '501만원 이상'(100%=4) 분류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부모월평균소득은 제곱근(square root)을 취하여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② 부모경제수준

부모경제수준은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부모님 경제수준에 대해 '상', '중상', '중', '중하', '하'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측정하였고, 분산분석을 위해

‘상’, ‘중’, ‘하’ 로 재분류하였고, 회귀분석에는 ‘상’, ‘중상’, ‘중’, ‘중하’, ‘하’를 5 점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③ 거주현황

거주현황은 미혼직장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지, 부모와 분리된 주거공간에서 따로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해 측정하였다. 거주현황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부모함께거주’ 1, ‘전월세따로거주기타’ 0으로 하여 투입하였다.

④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은 ‘부모가 조사대상자에게 주택자금, 전세자금, 결혼비용을 지원할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조사대상자에게 부모로부터 주택자금, 전세자금, 결혼비용 등을 지원받을 가능성을 질문하여,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의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역산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주택자금, 전세자금, 결혼비용 등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직장 관련 변인

① 고용형태

본 연구에서 고용 형태는 정규직, 비정규 계약직, 단기 계약직, 일용직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

하여 정규직=1,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0으로 코딩하였다.

② 직종

근무 직종은 전문 경영직, 일반관리 사무직, 기술 기능 생산직, 판매 서비스직, 기능서비스직, 농림어업직, 단순노무직, 학생/기타/무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직종 1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전문경영직은 1, 전문경영직 아닌 직종은 0으로 하였다. 직종 2는 기술기능생산직은 1, 기술기능생산직 아닌 직종은 0으로 하여 투입하였다.

③ 직무만족도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는 '직장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와 기대, 직무 수행을 비롯하여 근무여건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긍정적 감정 상태의 수준'으로 정의한다.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혜영·선보영·김상돈(2010)이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급여(소득)수준, 근로시간, 직장(사업)의 성장가능성, 고용 안정성, 승진 기회, 퇴직금, 출산(육아)휴직, 휴가 등 복지수준, 능력 개발 기회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만족도 측정 도구 Cronbach α 는 총 7문항 .879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7항목 전체 평균값을 산출하여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④ 가족친화조직문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는 종업원의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믿음으로 정의된다(Tomson, Beauvais & Lyness, 1999; 방묘진, 2004).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조직문화 인식에 대해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에서 도입하고 있는 가족친화적 제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상사 및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충성도 여부 인식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 가능하고, 일·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유연한 분위기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한다. 가족친화조직문화는 Tomson, Beauvais와 Lyness(1999)가 개발한 도구 20문항 가운데 방묘진(2004)의 연구에서 활용한 14문항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방묘진의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 하위 개념인 근무시간에 대한 기대정도 3문항, 불이익에 대한 우려정도 4문항, 조직의 관리적 지원 7문항으로 분류하여 7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 14항목 가운데 1, 4, 5, 6, 7, 13번 문항을 역코딩하여, 전체 14문항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친화조직문화 전체의 Cronbach α 값은 .905로 나타났다.

(4) 정책 관련 변인

본 연구에서 결혼지원정책은 ‘미혼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미혼자의 결혼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자금주택정책, 일자리정책, 결혼준비정책을 등을 포괄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결혼지원정책필요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혜영·선보영·김상돈(2010)의 도구를 활용한 박주희(2017)의 도구에 정

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새로 발표한 정책 내용을 추가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결혼지원정책필요성은 14개의 세부 정책을 개별 문항으로 구성하고 각 문항의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의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14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3개 요인을 추출하였고, 각각 자금주택정책필요성, 일자리정책필요성, 결혼준비정책필요성으로 명명하였다.

① 자금주택정책필요성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은 임대주택필요성, 주택자금대출필요성,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지원필요성, 청년신혼부부매입·전세임대주택필요성, 결혼자금융자필요성, 결혼유급휴가필요성, 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확대필요성 등 7개 문항의 평균 점수로 측정하는 Likert 척도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금주택정책필요성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자금주택정책필요성 총 7문항의 Cronbach α 값은 .919이다.

② 일자리정책필요성

일자리정책필요성은 일가정고용환경필요성, 유연근무제택원격근무필요성, 청년일자리창출필요성, 고용지원인프라확충필요성 등 4개 문항의 평균 점수로 측정하는 Likert 척도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자리정책필요성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자금주택정책필요성 총 4문항의 Cronbach α 값은 .836이다.

③ 결혼준비정책필요성

결혼준비정책필요성은 결혼관련정보제공필요성, 만남의장제공필요성,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필요성 등 3개 문항의 평균 점수로 측정하는 Likert 척도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금주택정책필요성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자금주택정책필요성 총 3문항의 Cronbach α 값은 .918이다.

<표Ⅲ-1> 변수의 정의와 측정도구

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분석을 위한 코딩	Cronbach α
종속 변수	결혼 의향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개인 관련 변인	성별	연구대상자의 성별	여자=1 남자=0	
	연령	연구대상자의 만 나이	20~29세=1 30~39세=2 40세 이상=3	
	교육 기간	공교육 받은 기간	고졸이하=1 대졸이하=2 대학원이상=3	
	월평균 소득	최근 3개월 월평균소득(세금 공제 이전 금액)	자연로그 취함	
	자산 총액	연구대상자의 자산총액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기타 자산을 합산한 총액	제곱근 변환	
	부채 유무	부채 유무	있다=1 없다=0	
부모 관련 변인	부모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정부지원, 자녀의 생활비 지원 등)을 합산한 총액	제곱근 변환	
	부모 경제 수준	조사대상자 부모의 경제수준	상=1 중=2, 하=3	
	거주 현황	부모님과 함께 거주, 따로 거주, 주거 형태(자가 소유, 전세, 월세, 기타)	부모함께 거주=1 전·월세따로거주기타=0	
	주택결혼비용 지원가능성	매우 높음=1 높음=2, 보통=3 낮음=4 매우 낮음=5	매우 높음=5 높음=4, 보통=3 낮음=2 매우 낮음=1(역코딩)	

직장 관련 변인	고용 형태	-정규직 -비정규계약직 -단기 계약직 -일용직	정규직=1, 비정규계약직=2, 단기계약직=3, 일용직=4 가변수 처리 정규직=1 정규직 아닌 고용형태=0)	
	종사 직종	-전문경영직 -일반관리사무직 -기술기능생산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서비스직 -농림어업직 -단순노무직 -학생/기타/무직	전문경영직=1 일반관리사무직=2, 기술기능생산직=3, 판매서비스직=4, 기능서비스직=5, 농림어업직=6, 단순노무직=7, 학생/기타/무직=8 가변수 처리 전문경영직=1 전문경영직 아닌 직종==0, 기술기능생산직=1 기술기능생산직 아닌 직종=0)	
	직무 만족도	-급여수준 -근로시간 -성장가능성 -고용안정성 -승진기회 -퇴직금 -출산(육아)휴직 -휴가 등 복지수준	매우불만족=1 약간불만족 =2 보통=3 약간만족=4 매우만족=5 해당 없음=6 (7항목 전체 평균값 산출 투입 분석)	.879
	가족 친화 조직 문화	-근무시간 기대 정도 -불이익에 대한 우려 -조직관리 지원	전혀 그렇지 않다=7 그렇지 않다=6 별로 그렇지 않다=5 보통이다=4 약간 그렇다=3 그렇다=2 매우 그렇다=1 (1,4,5,6,7,13 항목 역코딩)	.905

정책 관련 변인	자금주 택정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주택자금대출 -신혼부부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 -청년 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주택, 청년에 비 부부 전세임대주택, -근로자 혼례비 (결혼자금) 용자 -결혼준비를 위한 유급 휴가제도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 주택 공급 대폭 확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 단지 조성) 	<p>전혀 필요하지 않다=1 별로 필요하지 않다=2 보통이다=3 어느 정도 필요하다=4 매우 필요하다=5</p>	.919
	일자리 정책필 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고용 환경 조성(정시퇴근, 근무시간 외 연락 자제)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연가 사용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제고 및 창업활성화 해외 취업촉진 -청년이 체감 가능한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교육 고용 연결고리 강화 	<p>전혀 필요하지 않다=1 별로 필요하지 않다=2 보통이다=3 어느 정도 필요하다=4 매우 필요하다=5</p>	.836
	결혼준 비정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이성 간의 만남의 장 제공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p>전혀 필요하지 않다=1 별로 필요하지 않다=2 보통이다=3 어느 정도 필요하다=4 매우 필요하다=5</p>	.918

3. 자료수집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연구윤리 확보 절차에 따라, 연구계획심의를 신청하여, 2019년 5월 24일 본 연구에 대한 심의 면제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SSWUIRB 2019-013).

본 연구의 사전조사는 선행연구에 사용된 척도 중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으로 구성하여, 2019년 5월 31일부터 2019년 6월 2일까지 연구대상자 연령에 속하는 미혼직장인 15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실시하였다.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설문지 작성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파악하였다. 사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은 후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하고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설문지를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직접 배포하였고,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한 사람들에게 한해 온라인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9년 6월 3일부터 2019년 7월 21일까지 서울특별시·경기도·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직장인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배포한 후 응답한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링크를 공유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기업체, 소방서, 경찰서, 학교, 병원, 관공서, 법무법인, 사회복지시설, 대형·중형·소형 매장 등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직장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비밀보장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지인이 추천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이메일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수집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IRB 승인 시 제시한 내용대로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직접 배포하여 수집한 설문지 455

부, 온라인 설문지 66부로 총 521부인데, 연구목적에 부합한 설문지 총 48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과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과 정책 관련 변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데이터 코딩 과정을 거친 후 다중회귀분석 가정의 위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상점진단과 잔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521명의 자료 중 부실 기재되거나 문제점이 발견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48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및 주요변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를 검증하고,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고 그 값을 제시하였다. 분산분석 후 집단 간 세부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분석(Scheffe)을 실시하였다.

셋째,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관계분석표를 제시하였다.

넷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혼직장인의 성별에 따른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령대에 따른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5.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조사기간에 직장에 근무 중인 미혼직장인이다.

종속변수인 결혼의향은 ‘전혀 그렇지 않다’ 51명(10.6%), ‘별로 그렇지 않다’ 86명(17.9%), ‘보통이다’ 108명(22.5%), ‘대체로 그렇다’ 132명(27.5%), ‘매우 그렇다’ 103명(21.5%)이고 평균은 3.31점(SD=1.28)이었다.

연구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 관련 변인에서 성별은 ‘여자’ 269명(56%), ‘남자’ 211명(44%)이었다. 연령은 ‘20대(20~29세)’ 239명(49.8%), ‘30대(30~39세)’ 184명(38.3%), ‘40대이상(40세이상)’ 57명(11.9%)이었으며, 평균 31.15(SD=6.30)세였다. 교육기간은 ‘고졸 이하(12년 이하)’ 59명(12.3%), ‘대졸 이하(13-16년)’ 348명(72.5%), ‘대학원재학 이상(17년 이상)’ 73명(15.2%)이었고, 평균은 15.68(SD=1.69)년이었다. 거주현황은 ‘부모와 동거’ 268명(55.8%), ‘전·월세 따로’ 155명(32.3%), ‘기타’ 57명(11.9%)이었다. 월평균소득은 ‘0~200만원’ 123명(25.6%), ‘201만원~300만원’ 171명(35.6%), ‘301만원~360만원’ 69명(14.4%), ‘361만원 이상’ 117명(24.4%)이고, 평균은 337.69만원(SD=279.94)이었다. 자산총액은 ‘0~2500만원’ 125명(26%), ‘2501만원~5000만원’ 128명(26.7%), ‘5,001만원~10,400만원’ 108명(22.5%), ‘10,401만원 이상’ 119명(24.8%)이었으며, 자산총액 평균은 9,279.83만

원(SD=12,204.90)이었다. 부채는 ‘있다’ 172명(35.8%)이고, ‘없다’ 308명(64.2%)이었다.

부모 관련 변인 중 부모 월평균 소득은 ‘0~250만원’ 131명(27.3%), ‘251만원~400만원’ 142만원(29.6%), ‘401만원~500만원’ 95명(19.8%), ‘501만원 이상’ 112명(23.3%)이었고 평균은 441.61만원(SD=330.99)이었다. 부모경제수준은 ‘상’ 93명(19.4%), ‘중’ 219명(45.6%), ‘하’ 168명(35.0%)이었다. 거주 현황은 부모와 동거268(55.8%), 전·월세 따로155(32.3%), 기타 57(11.9%)이었다. 부모의 주택 결혼비용지원가능성은 ‘매우 높음’ 40명(8.3%), ‘높음’ 119명(24.8%), ‘보통’ 135명(28.1%), ‘낮음’ 94명(19.6%), ‘매우 낮음’ 92명(19.2%)이고 평균은 3.16점(SD=1.23)이었다.

직장 관련 변인에서 고용 형태는 ‘정규직’ 351명(73.1%), ‘비정규계약직’ 90명(18.8%), ‘단기계약직’ 35명(7.3%), ‘일용직’ 4명(0.8%)이었다. 근무 직종은 ‘전문경영직’ 94명(19.6%), ‘일반관리사무직’ 204명(42.5%), ‘기술기능생산직, 기타’ 182명(37.9%)이었다. 직무만족도는 평균 3.16점(SD=0.88)이었고, 가족친화 조직문화 평균은 4.28점(SD=1.08)이었다.

정책 관련 변인 중 결혼지원정책필요성 14항목 중 자금주택정책필요성 평균은 4.08점(SD=.80)이고, 일자리정책필요성 평균은 4.09점(SD=.78)이고, 결혼준비정책필요성 평균은 2.80점(SD=1.18)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n=480)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결혼의향		전혀 그렇지 않다	51	10.6	3.31	1.28		
		별로 그렇지 않다	86	17.9				
		보통이다	108	22.5				
		대체로 그렇다	132	27.5				
		매우 그렇다	103	21.5				
개인 관련 변인	성별	여자	269	56	31.15	6.30		
		남자	211	44				
	연령	20대(20~29세)	239	49.8				
		30대(30~39세)	184	38.3				
		40대 이상(40세~53세)	57	11.9				
	교육기간	고졸 이하(12년 이하)	59	12.3			15.68	1.69
		대졸 이하(13~16년)	348	72.5				
		대학원재학 이상 (17년 이상)	73	15.2				
	월평균소득	25%(0~200만원)	123	25.6			337.69	279.94
		50%(201~300만원)	171	35.6				
		75%(301~360만원)	69	14.4				
100%(361만원 이상)		117	24.4					
자산총액	25%(0~2,500만원)	125	26.0	9279.83	12024.90			
	50%(2,501~5,000만원)	128	26.7					
	75%(5,001~10,400만원)	108	22.5					
	100%(10,401만원 이상)	119	24.8					
부채 유무	있다	172	35.8					
	없다	308	64.2					
부모 관련 변인	부모 월평균 소득 (연속)	25%(0~250)만원)	131	27.3	441.61	330.99		
		50%(251~400만원)	142	29.6				
		75%(401~500만원)	95	19.8				
		100%(501만원 이상)	112	23.3				
	부모 경제 수준	상	93	19.4				
	중	219	45.6					
	하	168	35.0					

	거주 현황	부모와 동거 전·월세 따로 기타	268 155 57	55.8 32.3 11.9		
	주택결혼비용 지원가능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40 119 135 94 92	8.3 24.8 28.1 19.6 19.2	3.16	1.23
직장 관련 변인	근무 직종	전문경영직 일반관리사무직 기술기능생산직, 기타	94 204 182	19.6 42.5 37.9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계약직 단기 계약직 일용직	351 90 35 4	73.1 18.8 7.3 .8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3.16	0.88
	가족친화 조직문화	가족친화 조직문화			4.28	1.08
정책 관련 변인	자금주택정책 필요성	1.임대주택 필요성 2.주택자금대출필요성 3.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지 원 필요성 4.청년신혼부부매입·전세 임대주택 필요성 5.결혼작금융자 필요성 6.결혼유급휴가필요성 11.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 택 확대 필요성			4.05 4.34 4.30 4.22 3.62 3.97 4.05	.98 .86 .92 .92 1.08 1.05 1.02

		자금주택정책필요성 7문항 평균			4.08	.80
일자리정책 필요성	7.일가정고용환경필요성				4.32	.86
	8.유연근무재택원격근무 필요성				4.21	.94
	9.청년일자리창출필요성 10.고용지원인프라확충 필요성				3.89 3.92	1.01 1.00
		일자리정책필요성 4문항 평균			4.09	.78
결혼준비정책 필요성	12.결혼관련정보제공 필요성				3.01	1.23
	13.만남의장제공 필요성				2.57	1.27
	14.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필요성				2.82	1.32
	결혼준비정책필요성 3문항 평균				2.80	1.18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개인 관련 변인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기간, 자산총액, 부채유무이고, 부모 관련 변인에서는 부모경제수준,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으로 나타났다. 직장 관련 변인에서는 고용형태와 직무만족도, 가족친화조직문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책 관련 변인에서 자금주택정책필요성과 결혼준비정책필요성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 개인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개인 관련 변인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기간, 자산 총액, 부채 유무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소득은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남자 3.58점, 여자 3.10점으로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미혼직장인 남자들의 결혼의향이 미혼직장인 여자들의 결혼의향과 비교하여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결혼의향이 여성에 비해 높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권소영, 2017; 고선강·어성연, 2013; 김정석, 2006; 김중백, 2013; 박주희, 2017; 박혜민, 2017; 조진영, 2016; 최효미, 2017; 홍은영, 2011)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결혼의향 평균은 30대(30~39세) 3.47점, 20대(20~29세) 3.44점, 40대 이상 2.28점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p < .001$). 세 집단 간 세부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0대와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보다 결혼의향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남녀의 연령이 낮을수록(어릴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고선강·어성연, 2013; 김정석, 2006; 김혜영·선보영, 2011; 원아름·박정윤, 2016; 이정은, 2017; 탁현우, 201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미혼남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서정연, 2018; 이삼식, 2006; 진달래, 2013; 홍은영, 2011)과 유사한 결과이다.

교육기간에서는 고졸 이하 (12년) 2.98점, 대학원 (17년) 이상이 3.27점, 대졸 이하(16년) 3.38점 순으로 나타났다($p < .1$). 집단 간 세부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졸 (16년)이하의 학력과 대학원 (17년)이상의 학력집단이 고졸이하 (12년) 학력집단보다 결혼의향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여성, 청년남녀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결혼의향도 높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권소영·강시은·엄세원·박지수·이재림, 2017; 이정은, 2017; 한영선, 2015)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미혼남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질 경우 결혼의향이 높아진다는 연구(김정석, 2006; 진달래, 2013)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혼직장인의 자산총액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는 자산총액 2,501만 원~5,000만원 3.49점, 5,001~10,400만원 3.42점, 0~2,500만원 3.39점, 10,401만원 이상 2.9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1$). 집단 간 차

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산총액 2,501~5,000만원의 미혼직장인과 10,401만원 이상 집단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산총액 2,501~5,000만원의 미혼직장인들의 결혼의향이 10,401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자산 하위권에 속하는 미혼직장인 남성이 금융자산 중위권인 집단에 비해 결혼의향이 감소하고, 금융자산 하위권에 속하는 미혼직장인 여성은 금융자산 중위권에 속하는 집단보다 결혼의향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진달래, 2013)의 결과와 배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부채유무에 따른 결혼의향 평균은 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3.40점으로 나타났고,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3.16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 < .1$). 미혼직장인들 가운데 부채가 없는 집단이 부채가 있는 미혼직장인들과 비교하여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 영향 요인에서 가구의 부채가 많을수록 여성의 결혼 이행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주휘정·김민석, 201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2) 부모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부모 관련 변인인 부모경제수준, 거주현황,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에 따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경제수준과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경제수준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부모경제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이,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부모경제수준을 '상'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결혼의향 평균은 3.77점으로 나타났

고, ‘중’은 3.30점, ‘하’는 3.07점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01$). ‘상·중·하’ 집단 간 세부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경제수준을 ‘상’으로 인식하는 대상자들의 결혼의향이 ‘중’ 수준과 ‘하’수준으로 인식하는 연구대상자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부모의 금융자산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미혼여성이 결혼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한영선, 2015)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이 보통이거나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에 따른 결혼의향에 대해 ‘높다’ 3.84점, ‘보통이다’ 3.25점, ‘낮다’ 2.91점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을 ‘높다’고 인식하는 미혼직장인 집단의 결혼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에 대해 ‘보통이다’로 인식하는 집단의 결혼의향이 ‘낮다’로 인식하는 미혼직장인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IV-1>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항목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¹⁾	
개인 관련 변인	성별	여자	269	3.10	1,316	17.328	.001	
		남자	211	3.58	1,186			
	연령	20대(20~29세)	239	3.44	1.211	22.919	.001	A
		30대(30~39세)	184	3.47	1.250			A
		40대 이상	57	2.28	1.221			B
	교육기간	고졸 이하(12년)	59	2.98	1.345	2.429	.089	A
		대졸 이하(16년)	348	3.38	1.214			A
		대학원(17년) 이상	73	3.27	1.502			A
	월평균 소득	0~200만원	123	3.18	1.331	1.148	.329	
		201~300만원	171	3.32	1.195			
301~360만원		69	3.54	1.183				
361만원 이상		117	3.32	1.400				
본인 자산총액	0~2,500만원	125	3.39	1.184	4.18	.006	AB	
	2,501~5,000만원	127	3.49	1.147			A	
	5,001~10,400만원	108	3.42	1.261			AB	
	10,401만원 이상	119	2.97	1.461			B	
부채 유무	있다	172	3.16	1.299	3.970	.047		
	없다	308	3.40	1.266				

	항목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¹⁾
부모 관련 변인	부모 경제수준	하	168	3.07	1.417	9.324	.001	B
		중	219	3.30	1.204			B
		상	93	3.77	1.075			A
	거주현황	부모와 동거	268	3.38	1.265	1.249	.288	
		전월세 따로	155	3.18	1.322			
		기타	57	3.33	1.244			
	주택결혼 비용지원 가능성	낮다	186	2.91	1.351	24.931	.001	C
		보통이다	135	3.25	1.131			B
		높다	159	3.84	1.136			A

¹⁾ 사후검증 결과 동일 집단으로 분류된 경우 같은 기호를 부여함

3) 직장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미혼직장인의 직장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용형태와 직무만족도, 가족친화조직문화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1$, $p < .001$). 연구대상자의 근무 직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혼직장인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정규직 외 고용형태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의 결혼의향 평균이 3.38점, 정규직 외 고용형태 종사자의 결혼의향 평균이 3.13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1$). 이러한 결과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이행 가능성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들(박주희, 2017; 박혜민, 2017; 주휘정·김민석, 2018; 탁현우, 2017; 한영선, 2015)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미혼직장인의 직장 관련 변인에서 직무만족도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직무만족도를 ‘상’이라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의 결혼의향이 3.49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의 경우는 3.24점, ‘하’는 2.57점 순으로 나타났는데($p < .001$),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직무만족도 ‘상’과 ‘중’으로 인식하는 연구대상자 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결혼의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혼남성의 취업의 질(상용직, 임금수준이 높을 경우)이 결혼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최필선·민인식, 2015)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의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한 연구(김혜영·선보영, 2011)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알 수 있다.

미혼직장인이 인식하는 가족친화조직문화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가족친화조직문화수준을 ‘상’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결혼의향이 3.64점, ‘중’은 3.34점, ‘하’는 2.89점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족친화조직문화수준을 ‘상’으로 인식하는 집단과 ‘중’ 수준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결혼의향이 ‘하’로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비혼 이유는 경제적 이유보다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갖가지 부담, 일과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한 결혼기피가 더 큰 이유일 것이라고 보고한 연구(탁현우, 2017)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여성의 경우 결혼의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김혜영·선보영, 2011)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미혼직장인이 인식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주택정책필요성과 결혼준비정책필요성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반면 일자리정책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먼저 정책 관련 변인에서 자금주택정책필요성에 따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 차이를 살펴보면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이 확인된다. 자금주택정책필요성에 따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 평균은 ‘필요하다’ 고 인식하는 경우 3.44점, ‘보통이다’ 2.79점, ‘필요하지 않다’ 2.04점의 순으로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집단 간 세부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결혼을 위한 자금주택정책이 ‘필요하다’로 인식하는 수준이 결혼의향이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수준으로 인식하는 미혼 직장인들의 결혼의향이, ‘필요하지 않다’로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준비정책필요성에 따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01$). ‘필요하다’ 3.59점, ‘보통이다’ 3.21점, ‘필요하지 않다’ 3.15점의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결혼준비지원정책이 ‘필요하다’로 인식하는 연구대상자 집단의 결혼의향이 ‘보통이다’와 ‘필요하지 않다’로 인식하는 연구대상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 변인들에 따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 차이를 파악하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개인 관련 변인에서 성별, 연령, 교육기간, 자산총액과 부채유무였고, 가족 관련 변인에서 부모경제수준과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으로 나타났다. 직장 관련 변인은 고용형태와 직무만족도, 가족친화조직문화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책 관련 변인에서는 자금주택정책필요성과 결혼준비정책필요성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항목		구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¹⁾
직장 관련 변인	고용형태	정규직	351	3.38	1.295	3.524	.061	
		정규직 외 고용형태	129	3.13	1.234			
	근무 직종	전문경영직	94	3.41	1.477	1.023	.360	
		일반관리사무직	204	3.36	1.138			
기술기능생산직 기타 등		182	3.21	1.326				
직무 만족도	하	28	2.57	1.372	7.424	.001	B	
	중	237	3.24	1.247			A	
	상	215	3.49	1.271			A	
가족친화 조직문화	하	147	2.89	1.335	14.567	.001	B	
	중	157	3.34	1.147			A	
	상	176	3.64	1.257			A	
정책 관련 변인	자금주택 정책필요성	필요하지 않다	27	2.04	1.255	20.101	.001	C
		보통이다	38	2.79	1.277			B
		필요하다	414	3.44	1.229			A
	일자리 정책필요성	필요하지 않다	20	3.60	1.392	1.479	.225	
		보통이다	49	3.06	1.329			
		필요하다	411	3.33	1.269			
	결혼준비 정책필요성	필요하지 않다	217	3.15	1.403	6.162	.002	B
		보통이다	97	3.21	1.136			B
		필요하다	166	3.59	1.150			A

¹⁾사후검증 결과 동일 집단으로 분류된 경우 같은 기호를 부여함

2.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의 관계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과 관련한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IV-3>에 제시하였다. 개인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r=-.231, p<.001$), 성별($r=-.187, p<.001$), 자산총액($r=-.140, p<.01$), 부채유무($r=-.091, p<.05$)는 결혼의향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교육기간($r=.096, p<.05$)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자산총액이 적을수록, 부채가 없는 경우, 교육기간이 길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관계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는 연령($r=-.231, p<.001$)으로 나타났다.

부모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택결혼비용지원 가능성($r=.299, p<.001$), 부모경제수준($r=.201, p<.001$), 부모월평균소득($r=.116, p<.05$)이 결혼의향과 정적 상관관계로 밝혀졌다. 즉, 부모가 주택 및 결혼비용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부모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관계로 밝혀났다.

직장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 간 상관관계는 가족친화조직문화($r=.266, p<.001$)와 직무만족도($r=.275, p<.001$)가 결혼의향과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의 조직문화가 가족친화적일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관계로 확인되었다.

정책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 간 상관관계에서 자금주택정책필요성($r=.312, p<.001$)과 결혼준비정책필요성($r=.206, p<.001$)은 결혼의향과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직장인이 자금주택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결혼준비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관계로 밝혀졌다.

<표 IV-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종속 변수	독립변수																		
	결혼 의향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1																			
2	-.187***	1																		
3	-.231***	-.119**	1																	
4	.096*	-.015	.131**	1																
5	.024	-.195***	.395***	.289***	1															
6	-.140**	-.109*	.640***	.205***	.502***	1														
7	-.091*	-.091*	.202***	-.035	.058	.182***	1													
8	.116*	.134**	-.303***	.146**	-.007	-.113*	-.165***	1												
9	.201***	.132**	-.273***	.123**	-.071	-.072	-.162***	.425***	1											
10	.063	.091*	-.189***	.001	-.169***	-.263***	-.342***	.079	.107*	1										
11	.299***	-.043	-.214***	.131**	-.009	-.051	-.168***	.341***	.460***	.157**	1									
12	.086	-.111*	.086	.070	.317***	.183***	.032	-.069	-.095*	-.057	.037	1								
13	.039	.088	.092*	.299***	.275***	.162***	-.128**	.069	.050	.058	.104*	.050	1							
14	-.063	-.104*	-.051	-.336***	-.200***	-.174***	.106*	-.112*	-.105*	-.066	-.161***	-.195***	-.386***	1						
15	.266***	-.045	-.129**	.083	.138**	.053	-.015	.091	.258***	.041	.275***	.286***	.046	-.138**	1					
16	.275***	-.012	-.173***	-.049	-.079	-.075	.033	.050	.226***	.095*	.232***	.085	-.046	-.050	.607***	1				
17	.312***	-.045	-.088	.095*	.065	.004	-.039	.046	-.050	.044	.013	.114*	.021	-.144**	.037	.078	1			
18	.052	.111*	-.083	.041	-.017	-.076	-.117*	.062	-.056	.075	.044	.013	.033	-.099*	-.094*	.045	.614***	1		
19	.206***	-.088	-.069	-.099*	-.096*	-.141**	.016	.006	.023	-.064	.003	.006	-.207***	.066	.132**	.186***	.246***	.146**	1	

* $p < .05$, ** $p < .01$, *** $p < .001$

1=결혼의향, 2=성별, 3=연령, 4=교육기간, 5=월평균소득(자연로그변환), 6=자산총액(제곱근변환), 7=부채유무, 8=부모월평균소득(제곱근변환), 9=부모경제수준, 10=거주현황, 11=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 12=고용형태, 13=직종1(전문경영직), 14=직종2(기술기능생산직), 15=직무만족도, 16=가족친화조직문화, 17=자금주택정책필요성, 18=일자리정책필요성, 19=결혼준비정책필요성

3. 성별과 연령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분석(Two-way ANOVA)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주 효과), 성별과 연령대의 상호작용 효과³⁾(종속변수인 결혼의향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결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가설 1. 성별에 따른 결혼의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연령에 따른 결혼의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성별과 연령 간에 결혼의향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째, 개인 관련 변인 중 성별과 연령이 각각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주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성별($F=22.131$, $p<.001$)과 연령대($F=15.387$, $p<.001$)의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성과 여성 간 결혼의향의 평균 차이와, 연령인 20대, 30대, 40대 이상 간 결혼의향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성별과 연령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F 값이 4.722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결혼의향의 평균은 성별과 연령대의 상호작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연령대에 따른 결혼의향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F=2.953$, $p>.05$), 여자의 경우 40대 이상 집단의 결혼의향 평균이 40대 미만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23.421$, $p<.001$). 또한, 20대 집단의 경우 성별에 따라 결혼의향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t=.823$, $p>.05$), 30대($t=3.390$, $p<.01$)와 40대 이상($t=3.920$, $p<.001$) 집단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결

3)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 : 변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방식, 한 실험변인의 효과가 다른 실험변인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한다(남종호 역, 심리학 연구방법. 시그마프레스,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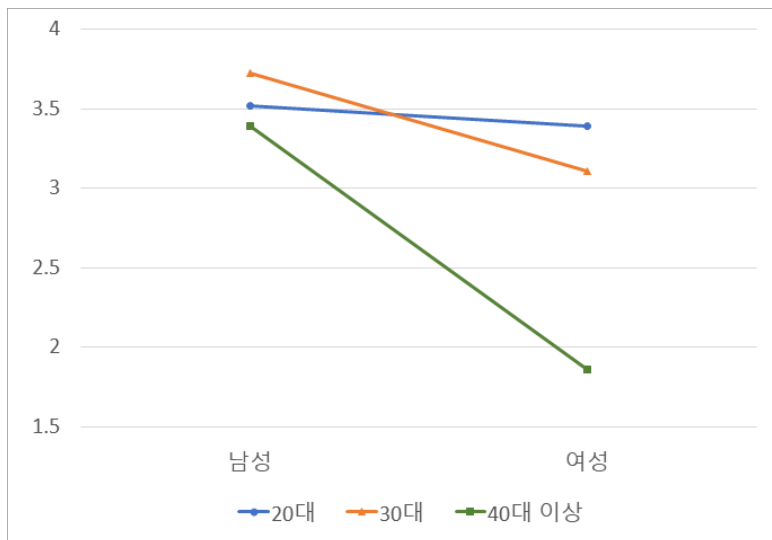
혼의향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IV-4>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31.838	1	31.838	22.131***
연령대	44.272	2	22.136	15.387***
성별×연령대	13.587	2	6.794	4.722**
오차	681.915	474	1.439	
전체	6054.000	480		

* $p < .05$, ** $p < .01$, *** $p < .001$

$R^2 = .134$ (Adj. $R^2 = .125$)



[그림 2]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4.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위계적 회귀분석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기 전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상관분석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결과는 <표IV-3>에 나타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변수들을 개인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고, 그룹별로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허용값은 0~1점 사이의 값과 분산팽창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2점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가능하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허용값(tolerance)은 0~1점 사이의 값인데, 진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허용값은 0.4미만이고, 분산팽창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10점 미만일 경우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0이상인 변수는 다중공선성을 의심해야 한다(김두섭·강남준, 2017)). 위계적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449 ~ .941, 분산팽창지수(VIF) 값이 1.063 ~ 2.229로 나타나 다중회귀분석 진행에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총 4 단계로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 거시체계 변인 순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을 1단계로 투입하였고, 미시체계인 부모 관련 변인을 2단계에 추가 투입하였으며, 중간체계인 직장 관련 변인을 3단계에 추가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인 정책 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영향력과 설명력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5>에 나타나 있다.

모형 1은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기간, 월평균소득, 자산총액, 부채유무를 투입하였다. 모형 1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대한 개인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은 12.3%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성별과 연령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연령의 영향력($\beta = -.237, p < .001$)이 성별의 영향력($\beta = -.203, p < .001$)에 비해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부모 관련 변인인 부모월평균소득, 부모경제수준, 거주현황,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2에서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부모 관련 변인의 설명력은 17.4%로, 모형 1에 비해 5.1% 증가하였으며 설명력의 변화량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 관련 변인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beta = .205, p < .001$)으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과 연령이 모형 2에서도 영향을 미쳤는데, 개인 관련 변인을 분석한 모형 1에 비해 성별의 영향력($\beta = -.192, p < .001$)과 연령은 영향력($\beta = -.160, p < .05$)이 하락하였다.

모형 3은 개인 관련 변인과 부모 관련 변인에 직장 관련 변인인 고용형태, 직종, 직무만족도, 가족친화조직문화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직

장 관련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력은 4.7% 증가하여 22.1%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의 변화량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형 3에서 가족친화조직문화($\beta = .175, p < .01$)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2에서 영향력을 나타낸 성별($\beta = -.187, p < .001$)과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beta = .148, p < .01$)은 모형 3에서도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연령의 영향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모형 3에서 개인 관련 변인인 자산총액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새롭게 나타났다($\beta = -.143, p < .05$). 자산총액이 적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이 자산 총액이 많은 미혼직장인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모형 4는 모형 3에 정책 관련 변인으로 자금주택정책필요성, 일자리정책필요성, 결혼준비정책필요성 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4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대한 정책 관련 변인의 설명력은 모형 3에 비해 8%가 증가하여 30.2%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의 변화량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책 관련 변인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금주택정책필요성과 일자리정책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자금주택정책필요성($\beta = .351, p < .001$)변인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정책필요성($\beta = -.192, p < .01$)변인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주택정책필요성 변인의 영향력이 일자리정책필요성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도 모형 3에서 영향력을 나타낸 성별($\beta = -.149, p < .01$)과 자산총액($\beta = -.138, p < .05$),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beta = .183, p < .001$), 가족친화조직문화($\beta = .152, p < .01$)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는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순위를 살펴보면, 자금주택정책필요성(β

=.351, $p<.001$), 일자리정책필요성($\beta=-.192$, $p<.01$),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beta=.183$, $p<.001$), 가족친화조직문화($\beta=.152$, $p<.01$), 성별($\beta=-.149$, $p<.01$), 자산총액($\beta=-.138$, $p<.05$)의 순으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4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 관련 변인이 투입된 모형 1에서 성별과 연령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쳤고, 성별의 영향력($\beta=-.203$, $p<.001$)보다 연령의 영향력($\beta=-.237$, $p<.001$)이 더 크게 나타났다. 미혼직장인 여자보다 남자의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어린 미혼직장인이 연령이 많은 미혼직장인보다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남성의 결혼의향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고선강·어성연, 2013; 권소영 외 2017; 김정석, 2006; 김중백, 2013; 박주희, 2017; 박혜민, 2017; 조진영, 2016)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미혼남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의향이 있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고선강·어성연, 2013; 김정석, 2006; 김혜영·선보영, 2011; 원아름·박정윤, 2016; 원아름, 2015; 이정은, 2017; 탁현우, 2017)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모 관련 변인이 투입된 모형 2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beta=.205$, $p<.001$)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남녀의 개인 인식 변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부모의 결혼자금지원을 수용하겠다고 여기는 경우 기능적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혜민·전귀연, 2018)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 제공이 많을수록 결혼의향이 높다는 연구(임선영·박주희, 2014)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는 집단의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조진영, 2016)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부모의 경제적 자원제공을 많이 받는 미혼남녀의 결혼의지가 약해진다는 연구(서정연, 2018)와 상반된 결과이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쳐 결혼의향도 낮아지게 된다고 보고한 연구(박지수·이재림, 2016)의 결과와도 배치되는 결과이다.

직장 관련 변인이 투입된 모형 3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친화조직문화($\beta=.175, p<.01$)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직장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조직문화가 가족친화적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의향이 크지 않고,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및 가족문화개선 제공 시 결혼을 고려할 의사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김혜영·선보영, 2011)를 지지하는 결과이고, 전문직 여성의 경우 장기간 출산휴가 등 사용 시 직장에서의 도태될까 걱정이 되고, 직장 내 과도한 업무가 자원고갈을 유발하여 이성교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어성연·조희금·고선강, 2010)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비혼 이유 중 경제적 이유보다 결혼으로 인한 부담, 일·가정 갈등으로 인한 결혼기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연구(탁현우, 2017)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혼남성의 경우 출산지원제도, 유연근무제, 부양가족지원제도 인식 순으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부양가족제도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결혼의향 가질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진달래, 2013) 결과와는 다른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관련 변인이 투입된 모형 4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금주택정책필요성과 일자리정책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자금주택정책필요성($\beta=.351, p<.001$)변인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정책필요성($\beta=-.192, p<.01$)변인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의 영향력이 일자리정책필요성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결혼지원정책 가운데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국가의 결혼지원정책필요성에 동의할수록 결혼의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연구(이정은, 2017)를 지지하는 결과이고, 신혼부부주택마련지원 등 직접적 지원정책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박주희, 2017)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결혼지원정책 중 주택자금융자, 결혼자금 융자 등의 활용가능성, 결혼장려 관련 정책의 효율성 인식이 결혼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김혜영·선보영, 2011; 진달래, 2013)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일자리정책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을수록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인 모형 4에서 개인 관련 변인과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 관련 변인 중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순위를 살펴보면, 자금주택정책필요성($\beta=.351, p<.001$), 일자리정책필요성($\beta=-.192, p<.01$),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beta=.183, p<.001$), 가족친화조직문화($\beta=.152, p<.01$), 성별($\beta=-.149, p<.01$), 자산총액($\beta=-.138, p<.05$)의 순으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지원정책 중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자리정책필요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주택 및 결혼비용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것을 알 수 있고, 직장의 조직문화가 가족친화적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혼직장인 여자에 비해 미혼직장인 남자의 결혼의향이 더 높고, 본인의 자산총액이 적을수록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IV-5>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변수	결혼의향(N=450)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S.E.)	β	t	B(S.E.)	β	t	B(S.E.)	β	t	B(S.E.)	β	t	
개인 관련 변인	성별	-519(.118)	-.203	-4.419***	-.493(.117)	-.192	-4.199***	-.478(.117)	-.187	-4.092***	-.381(.113)	-.149	-3.384**
	연령	-.048(.012)	-.237	-3.958***	-.032(.013)	-.160	-2.558*	-.023(.013)	-.115	-1.842	-.016(.012)	-.079	-1.310
	교육기간	.067(.037)	.086	1.817	.044(.037)	.056	1.198	.044(.037)	.056	1.166	.036(.036)	.046	.998
	월평균소득	.226(.142)	.087	1.587	.235(.140)	.090	1.676	.169(.145)	.065	1.168	.146(.138)	.056	1.058
	자산총액	-.002(.002)	-.084	-1.318	-.003(.002)	-.121	-1.919	-.004(.002)	-.143	-2.287*	-.003(.002)	-.138	-2.296*
	부채유무	-.201(.121)	-.076	-1.639	-.121(.126)	-.046	-.962	-.188(.125)	-.071	-1.510	-.160(.119)	-.060	-1.337
부모 관련 변인	부모 월평균소득				-.008(.009)	-.042	-.821	-.003(.009)	-.017	-.346	-.004(.009)	-.024	-.512
	부모 경제수준				.122(.078)	.083	1.555	.076(.078)	.051	.970	.094(.075)	.064	1.263
	거주현황				-.034(.123)	-.013	-.279	-.076(.121)	-.030	-.627	-.068(.116)	-.026	-.582
	주택결혼비용 지원가능성				.212(.053)	.205	4.033***	.153(.053)	.148	2.896**	.189(.051)	.183	3.728***
직장 관련 변인	고용형태							.156(.141)	.053	1.110	.052(.135)	.017	.383
	직종1							.126(.155)	.039	.812	.213(.149)	.066	1.428
	직종2							.026(.129)	.010	.202	.096(.123)	.036	.782
	직무만족도							.091(.085)	.063	1.074	.063(.082)	.043	.764
	가족친화 조직문화							.207(.066)	.175	3.128**	.180(.064)	.152	2.809**
정책 관련 변인	자금주택정책 필요성										.575(.092)	.351	6.224***
	일자리정책 필요성										-.321(.093)	-.192	-3.456***
	결혼준비정책 필요성										.091(.048)	.084	1.906
	상수												-.051
R^2 (Adj. R^2)													.123 (.111)
ΔR^2													.051***
F													10.388***
													9.272***
													8.226***
													10.338***

* $p < .05$, ** $p < .01$, *** $p < .001$

※ 가변수의 준거집단(성별 : 남자=0, 부채 유무 : 없다=0, 거주현황 : 전월세따로거주기타=0, 고용형태 : 정규직아닌 고용=0, 직종1 : 전문경영직 아닌 직종=0, 직종2 : 기술기능생산직 아닌 직종=0)

2) 성별에 따른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로 분류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IV-6>에 제시하였다.

<표 IV-6> 성별에 따른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수	결혼의향						
	남자			여자			
	N=196			N=254			
	B(S.E.)	β	t	B(S.E.)	β	t	
개인 관련 변인	연령	.006(.019)	.027	.296	-.028(.016)	-.148	-1.777
	교육기간	.057(.059)	.073	.974	.042(.047)	.055	.888
	월평균소득	.354(.190)	.148	1.863	-.042(.206)	-.015	-.204
	자산총액	-.005(.002)	-.198	-2.142*	-.003(.002)	-.123	-1.500
	부채유무	.080(.171)	.033	.468	-.353(.169)	-.128	-2.087*
부모 관련 변인	부모 월평균 소득	-.018(.013)	-.102	-1.378	-.002(.012)	-.010	-.152
	경제수준	.118(.108)	.087	1.095	.150(.108)	.096	1.388
	거주현황	.031(.177)	.013	.174	-.089(.159)	-.033	-.557
	주택결혼비용 지원가능성	.273(.078)	.278	3.510**	.106(.069)	.101	1.528
	직장 관련 변인	고용형태	.421(.227)	.135	1.853	-.106(.176)	-.037
직종1		.176(.234)	.052	.753	.274(.200)	.089	1.369
직종2		.208(.183)	.086	1.139	.077(.171)	.028	.451
직무 만족도		-.027(.124)	-.020	-.219	.180(.112)	.120	1.605
가족친화 조직문화		.171(.107)	.151	1.605	.121(.085)	.102	1.421
정책 관련 변인	자금주택정책 필요성	.657(.141)	.417	4.655***	.473(.127)	.288	3.716***
	일자리정책 필요성	-.324(.135)	-.212	-2.400*	-.321(.133)	-.182	-2.411*
	결혼준비정책 필요성	.097(.068)	.100	1.415	.095(.070)	.081	1.367
	상수		-2.762			1.366	
	R^2 (Adj. R^2)		.319 (.254)			.313 (.264)	
ΔR^2		.104***			.051**		
F		4.915***			6.338***		

* $p < .05$, ** $p < .01$, *** $p < .001$

※ 가변수의 준거집단(부채 유무 : 없다=0, 거주현황 : 전월세따로거주기타=0, 고용형태 : 정규직 아닌 고용=0, 직종1 : 전문경영직 아닌 직종=0, 직종2 : 기술기능생산직 아닌 직종=0)

미혼직장인 남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자금주택정책필요성($\beta=.417, p<.001$)이 미혼직장인남성의 결혼의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고,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beta=.278, p<.01$), 일자리정책필요성($\beta=-.212, p<.05$), 자산총액($\beta=-.198, p<.05$) 순으로 영향력이 유의미하였다. 즉, 자금주택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부모가 주택 및 결혼 비용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았고, 일자리정책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본인의 자산총액이 적을수록, 미혼직장인남성의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혼직장인남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설명력은 31.9%로 나타났다.

미혼직장인여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자금주택정책필요성($\beta=.288, p<.001$), 일자리정책필요성($\beta=-.182, p<.05$), 부채유무($\beta=-.128, p<.05$)의 순으로 미혼직장인여자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미혼직장인여성이 자금주택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일자리정책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그리고 부채가 없는 경우에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혼직장인여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설명력은 31.3%로 밝혀졌다.

성별에 따른 영향변인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이 미혼직장인남자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beta=.417, p<.001$)이 미혼직장인여성($\beta=.288, p<.001$)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이 미혼직장인여성보다 미혼직장인남성의 결혼의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일자리정책필요성의 경우에도 미혼직장인남성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beta=-.212, p<.05$)이 미혼직장인여성($\beta=-.182, p<.05$)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일자리정책필요성이 미혼직장인여성보다 미혼직장인남성의 결혼의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부모 관련 변인 중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은 미혼직장인남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

테($\beta=.278, p<.01$), 미혼직장인여성에서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 관련 변인인 자산총액의 경우도 미혼직장인남성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beta=-.198, p<.05$), 미혼직장인여성의 결혼의향에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 관련 변인에서 부채유무는 미혼직장인여성에서만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beta=-.128, p<.05$), 미혼직장인남성의 결혼의향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3) 연령에 따른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미혼직장인의 연령을 20대(20세-29세), 30대(30세-39세), 40대 이상(40세 이상)의 연령대로 분류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IV-7>에 제시하였다.

<표 IV-7> 연령에 따른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수	결혼의향									
	20대			30대			40대			
	N=223			N=172			N=55			
	B(S.E.)	β	t	B(S.E.)	β	t	B(S.E.)	β	t	
개인	성별	-.079(.166)	-.032	-.475	-.287(.181)	-.114	-1.588	-.638(.432)	-.253	-1.478
	교육기간	.057(.051)	.077	1.106	.036(.061)	.041	.584	.007(.104)	.013	.068
관련 변인	월평균소득	.140(.237)	.048	.593	.086(.227)	.030	.381	.541(.298)	.304	1.814
	자산총액	-.002(.003)	-.041	-.589	-.003(.002)	-.111	-1.454	-.007(.003)	-.301	-1.918
부모 관련 변인	부채유무	-.364(.178)	-.139	-2.043*	.078(.188)	.031	.416	.207(.357)	.086	.581
	부모 월평균 소득	.011(.012)	.063	.920	-.029(.015)	-.137	-1.927	-.033(.025)	-.221	-1.300
부모 경제 수준 관련 변인	부모 경제수준	.090(.109)	.063	.826	.119(.115)	.080	1.038	-.029(.249)	-.019	-1.117
	거주현황	.013(.170)	.005	.079	.014(.182)	.006	.079	-.218(.376)	-.091	-.581
직장 관련 변인	주택결혼 비용	.119(.072)	.119	1.646	.230(.081)	.228	2.836**	.326(.199)	.303	1.639
	지원가능성									
직장 관련 변인	고용형태	-.129(.185)	-.049	-.694	.579(.226)	.186	2.557*	-.552(.441)	-.196	-1.251
	직종1	.345(.220)	.113	1.568	.429(.236)	.131	1.820	-.464(.505)	-.179	-.918
직장 관련 변인	직종2	.183(.180)	.076	1.019	.262(.196)	.097	1.332	-.502(.398)	-.205	-1.262
	직무만족도	.082(.119)	.055	.689	.085(.126)	.066	.670	.032(.281)	.021	.113
정책 관련 변인	가족친화 조직문화	.083(.091)	.072	.911	.188(.103)	.165	1.831	.378(.223)	.325	1.666
	자금주택정책	.527(.132)	.349	3.985***	.769(.157)	.418	4.899***	-.040(.299)	-.031	-.134
정책 관련 변인	일자리정책	-.409(.126)	-.262	-3.259**	-.288(.148)	-.171	-1.952	.399(.344)	.268	1.160
	결혼준비정책	.192(.070)	.195	2.728**	.072(.077)	.067	.935	-.054(.174)	-.051	-.309
	상수		-.512		-1.541		-1.872			
	R^2 (Adj. R^2)		.235 (.172)		.389 (.322)		.497 (.266)			
	ΔR^2		.119***		.107***		.048			
	F		3.714***		5.767***		2.152*			

* $p < .05$, ** $p < .01$, *** $p < .001$

※ 가변수의 준거집단(성별 : 남자=0, 부채 유무 : 없다=0, 거주현황 : 전월세따로거주기타=0, 고용형태 : 정규직아닌 고용=0, 직종1 : 전문경영직 아닌 직종=0, 직종2 : 기술기능생산직 아닌 직종=0)

20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자금 주택정책필요성($\beta=.349, p<.001$), 일자리정책필요성($\beta=-.262, p<.01$), 결혼준비 정책필요성($\beta=.195, p<.01$), 부채유무($\beta=-.139, p<.05$)의 순으로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금 및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일자리정책필요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결혼준비정책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부채가 없는 경우, 20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20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설명력은 23.5%로 밝혀졌다.

30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자금 주택정책필요성($\beta=.418, p<.0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beta=.228, p<.01$), 고용형태($\beta=.186, p<.05$)의 순으로 영향력이 유의미하였다. 즉, 미혼직장인 30대의 경우, 자금 및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부모가 주택 및 결혼 비용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30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대한 관련 변인의 설명력은 38.9%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대한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F 값은 2.152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개별 변인의 영향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혼직장인의 연령에 따른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비교하면, 자금 주택정책필요성은 20대 미혼직장인과 30대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30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beta=.418, p<.001$)이 20대 미혼직장인($\beta=.349, p<.001$)의 영향력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자리정책필요성과 결혼준비정책필요성은 20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일자리정책필요성($\beta=-.262,$

$p < .01$)이 결혼준비정책필요성($\beta = .195, p < .01$)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일자리정책필요성과 결혼준비정책필요성은 30대 미혼 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채유무는 20대 미혼 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beta = -.139, p < .05$), 30대와 40대 이상 미혼 직장인의 결혼의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0대 미혼 직장인의 결혼의향에는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과 고용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beta = .228, p < .01$)의 영향력이 고용형태($\beta = .186, p < .05$)의 영향력보다 더 크게 밝혀졌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과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결혼지원정책 관련 변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미혼직장인이 자금주택정책필요성과 일자리정책필요성, 결혼준비정책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결혼지원정책이 시행될 경우 결혼의향을 더 높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결혼지원정책 가운데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시대 주혼인 연령층인 30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신혼부부주택마련지원 등 직접적 지원정책 만족도와 결혼의향 사이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박주희, 2017)와 신혼부부주택마련지원과 결혼자금융자 등 지원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김혜영·선보영, 2011)를 재확인하는 결과이므로, 이 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시급함을 감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실천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미혼직장인들의 결혼의향 지수 평균이 중간수준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이들이 비혼보다는 결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국가차원에서 시행중인 결혼지원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자금주택정책을 보

완하여 시행함으로써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을 높이고, 결혼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책 관련 변인 중 일자리정책필요성 인식수준이 낮은 경우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거나 신뢰 수준이 낮아서일 수도 있고, 일자리정책보다 자금지원이나 주거지원정책 등 직접적으로 결혼이행에 더 중요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출일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므로, 시행 중인 일자리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둘째,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은 미혼직장인이 결혼의향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향후 청년지원정책 도입과 현재 시행 중인 정책 보완 시 주목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변인은 미혼직장인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정책 관련 변인 다음으로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주 혼인 연령층인 30대 미혼직장인남성의 결혼의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성이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념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주거공간마련과 결혼비용이 결혼결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결혼자금지원 수용 인식 집단이 비수용 집단에 비해 결혼의향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박혜민, 2017)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미혼층이 취업을 하더라도 30대에 경제적 자립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바이다. ‘중년기 가정의 자산과 3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에 관한 연구(고선강, 2013)에서 중년기 가정의 자녀세대에게는 학자금과 결혼비용, 신혼집 마련 비용 등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학자금지원과 신혼집 마련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중년기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청년층 스스로 경제적 독립이 가능 하도록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고

용 안정성, 주거비 지원을 강조했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따르면, 미시체계인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주택마련 및 결혼비용 등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부모의 경제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 가능한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있어서(통계청, 2019), 부모세대에게 필요한 노후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이윤정·고선강, 2011). 따라서 청년층 스스로 독립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도록, 육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용, 신혼집 마련 지원 등 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더불어 남성이 신혼집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과,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결혼예식 문화가 변화될 수 있도록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직장의 가족친화조직문화 수준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해 볼 때, 중간체계인 직장은 단순히 생계유지만을 위한 직무 수행의 장이 아니다. 조직구성원들 간에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친화조직문화 수준이 미혼직장인의 가정생활과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장에서 부여되는 과도한 업무가 비자발적 만혼화로 이어진다는 연구(어성연·조희금·고선강, 2013)와 직장의 일·가정갈등이 결혼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탁현우, 2017)는 본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유사한 결과이다. 가족친화조직문화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데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부 직장에 국한하지 않고, 평등적 관점에서 모든 일터에 가족친화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넷째, 미혼직장인이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요인이 결

혼의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대 미혼직장인이 부채가 있는 경우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났고, 부채가 미혼직장인여성의 결혼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령기에 학자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되는데, 20대에는 취직을 하더라도 상환하기 쉽지 않아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고, 이는 곧 결혼의향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부채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주휘정·김민석, 2018). 현재 규정되어 있는 미혼층의 부채 상환 시기와 상환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학령기 미혼층을 위한 대출 및 상환과 관련하여 유연성 있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자산총액이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에 자산총액의 부정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미혼여성의 결혼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세부적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을 향상시키고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가와 기업 등 범사회적 차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층이 성인기에 진입하게 되는 시기에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립 가능하고, 결혼의향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청년지원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과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해 볼 때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은 자녀의 결혼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결혼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자녀에 대한 주택결혼비용지원은 부모의 노후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청년층의 빈곤과 관련한 연구(김문길·김태완·임완섭·정은희·김재호·안주영·김성아·이주미·정희성·최준영, 2017)에서 청년은 경제력, 고용, 안정성 영역에서 중장년과 노인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초기 청년은 고용과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반면, 후기 청년은 주거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청년단독가구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은 전체 청년 가구 대비 청년 1인 가구의 부담 비율이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2005년 19~34세 청년층이 10년 후인 2015년 29~44세가 되어도 빈곤율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1인 가구 청년의 빈곤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빈곤의 대물림 가능성을 예측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상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재검토하여, 아동·청소년기부터 성인기 진입 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빈부차이를 체감하여 어린 시기부터 희망을 갖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빈곤층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유아기부터 아동·청소년기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빈곤의 대물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배움의 기회도 제한되고, 청년층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결혼의향을 갖기 어려우며, 중·장년층 빈곤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아동청소년수당, 양육수당, 장학금 지급 수준을 높이고, 주거비 지원, 의료비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층의 결혼의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혼자금지원과 주택마련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을 더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혼인율 상승을 위해 단편적·한시적인 정책의 한계점을 성찰하고, 청년기주거지원, 결혼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등을 비롯한 통합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저출산 정책인 M&P Packages는 결혼, 출산, 양육과 직접적 관련 있는 6개 분야 26개의 핵심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결혼 및 주거지원이 강조된다. SDN(Social Development Network)은 미혼남녀들에게 협력기관과 공인된 데이트 알선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늘리고 있다. 또한 주문식 아파트를 구매하는 생애 최초 신청자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주고, 신혼부부들에게 주택마련보조금(CPF Housing Grants)을 제공해 공공주택 구매 시 주택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일정 주택 비율을 배정받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입주 전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정책을 시행중이다(김명희, 2017). 한 때 세계 최저 출산율 1위를 경험했던 일본은 합계출산율 상승을 위해 신신엔젤정책까지 시행했지만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아 시급하게 원인을 분석했다. 혼외자녀 기피 문화의 영향으로, 결혼을 해야 출산력으로 이어진다는 관념이 팽배하자, 결혼과 자녀출산이 경제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차원에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기본으로 시행하고, 미혼층을 위한 결혼지원정책을 병행하여,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정책까지 연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행중이다. 지자체들은 청년층의 결혼이행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청년남녀의 결혼주선, 민간결혼이벤트 업체들과 공동협력 통해 독자적인 결혼장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혼남녀들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성사시키고 있다(김명희, 2017).

위에서 제시한 싱가포르와 일본의 사례 가운데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미혼층의 욕구를 파악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 미혼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을 위해, 미혼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 공공주택 비율을 늘리고, 생애최초주택구매자와 미혼청년층이 공급물량의 일정 주택 비율을 우선적으로 배정받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에서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동하는 미혼청년층과, 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미혼청년층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월세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월세 등 주거비용 부담이 1인 가구를 비롯한 청년층 빈곤의 주요 원인이므로,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차원에서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돕고 결혼의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셋째, 가족친화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국가차원에서 기업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직장인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장시간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일·가정양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족친화조직문화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민간대기업, 상용근로자, 사무직을 제외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활용수준은 높지 않다(보건사회연구원, 2018). 경직된 유형의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의 직장문화, 일 중심, 성과중심만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친화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휴가제도를 이용하는 직원 대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더 늘려 부담을 줄여주어야, 업무 공백도 안 생기고 직장의 조직문화도 유연해질 수 있다. 연간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2016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2,052시간으로 나타났고, 장시간 근로시간은 ‘관행’으로 인식되어 만연화 되어 있다(김근주, 2018)⁴. 장시간 근로를 당연 시하는 ‘관행’은 일·가정 양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장시간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직장에서 시행중인 휴가정책을

4) 주 : 한국의 취업자·임금근로자 통계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근거한 수치임.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2018.5.28.기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려 자녀와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휴직기간의 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 2019년 9월까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3~5일(최초 3일 유급)이었다.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 10일로 확대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과거에 비해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기간이 확대되었으나, 오래전부터 10일을 부여하고 있는 스웨덴과 뉴질랜드에 비해 낮은 상황이고, 2주를 부여하는 해외주요국(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보다는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다(고용노동부, 2019). OECD 주요국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소득대체율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높지 않다. 스웨덴은 총 480일의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90일까지 확대되어 있는 부성휴가의무사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61.1%로 나타나고 있다.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의 출산휴가 소득대체율은 100.0%이고, 프랑스의 출산휴가 소득대체율은 93.5%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2017). OECD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유급휴가기간을 늘리고 휴직급여지급을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국가차원에서 미혼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본 연구에서 주 혼인층인 30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고용형태가 영향을 미쳐 정규직 종사자의 결혼의향이 정규직 외 고용형태 종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출산으로 인적 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실에서 국내 양질의 일자리부족은 생산성 하락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 3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으로 해외취업지원 정책이 제시되었는데, 그보다 시급한 것이 국내 양질의 일자리창출임을 시급하게 인식해야 한다. 청

년층이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정규직 의무채용 비율을 확대하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해 참고할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미혼직장인을 연구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미혼남녀 전체의 의견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둘째,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편의표집하여 조사했기 때문에, 중소지방도시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셋째, 국외 문헌에 대한 고찰 등 충분한 선행연구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넷째,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했으나 시간체계에 대한 적용이 미진하였다.

다섯째, 결혼지원정책필요성과 결혼의향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위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보다 다각적으로 적용하여,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미혼직장인의 자산 총액과 부채유무 등 변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고,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직장 내 가족친화조직문화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며,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결혼지원정책필요성이 결혼의향에 미치

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 진행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조직문화 측정도구가 외국에서 개발된 지 오래되었다는 점과 실제 우리나라의 문화와 유리된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가족친화조직문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택결혼비원지원가능성 척도 문항은 단일문항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는데, 하위 세부적 내용까지 측정 가능한 척도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미혼직장인의 자산총액이 결혼의향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심층적인 원인 파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부적 영향으로 나타난 일자리정책필요성과 결혼의향 관계에 대해 심층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양적연구를 혼합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권소영·강시은·엄세원·박지수·이재림(2017). 청년 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세대관계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3-25.
- 권중돈·김동배(200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 고선강(2013). 중년기 가정의 자산과 3세대 간 경제자원 이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133-144.
- 고선강·어성연(2013).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63-79.
- 고용노동부(2019).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개정법률설명 자료.
- 고용노동부(2019). 여성고용정책과 자료.
- 김근주(2018). 근로시간법제의 현황과 과제. 월간노동리뷰, 159, 9-21.
- 김두섭·강남준(2017).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파주: 나남.
- 김기식·박선나(2018).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방향 검토. 더미래연구소, 2018(01), 1-21.
- 김기연·신수진·최혜경(2003).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과 생활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87-99.
- 김명희(2017). 일본과 싱가포르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법과 한국에의 시사점.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1), 553-561.
- 김문길·김태완·임완섭·정은희·김재호·안주영·김성아·이주미·정희성·최준영(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8), 285-301.

- 김성준(2015).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38(4), 57-81.
- 김영란·장혜경·이윤석(2018).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지 이행 및 정책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16.
- 김영미(2018). 한국 2030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5), 386-396.
- 김예리(2008). 가족생태이론에 기초한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관련변인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김중백(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社會科學研究, 39(1), 167-189.
- 김한곤(2018). 여성들의 비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69, 273-301.
- 김향덕·이대중(2018). 공무원시험준비생 규모 추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8(1), 49-70.
- 김혜영·선보영·김상돈(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18), 1-277.
- 김혜영·선보영(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35.
- 남종호 역(2006). 심리학 연구방법. Elmes, David G. 서울: 시그마프레스. 매경시사용어사전. dic. mk. co. kr.
- 박민자(2004). 혼인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 16(1). 109-135.
- 박주희(2017).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지원정책 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및 수도권 결혼적령기 취업 미혼남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4), 1-15.
- 박지수·이재림(2016).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6(10), 262-263.
- 박혜민(2017).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민·전귀연(2018). 미혼남녀의 정서적·당위적·기능적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4), 53-80.
- 방묘진(2004).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직장-가정갈등과 직장 및 가정생활에
미치는 경로효과 검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호중·한창근(2018). 학자금 대출과 혼인이행: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을
중심으로. 保健社會研究, 38(1), 520-555.
- 보건복지부(2019).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 서정연(2018). 미혼남녀의 결혼의지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논총, 69, 371-393.
- 서지희(2010). 미혼 취업 여성의 성 역할태도와 생활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동거 여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병덕·성문주·백은령·이은미·최은화·정정호·송현아(2017).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서울: 학지사.
- 신재우(연합뉴스, 2018, 10, 30). 기혼여성 주당 1시간만 더 일해도 임신 확률
낮아진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029152800017>
- 어성연·조희금·고선강(2010). 전문직 미혼 남녀의 만혼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19.
- 왕석순·전주람·류경희(2015).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분석. 인구교육의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7(2), 35-51.
- 원아름(2015).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아름·박정윤(2016). 이성교제 중인 미혼남녀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및

- 이성교제 관계의 질과 결혼이미지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과 가족치료, 24(1), 145-166.
- 유계숙·김민정·서진솔(2019). 미혼 청년층의 성공적 결혼에 대한 태도가
독신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6(5), 477-490.
- 유계숙·최연실·성미애 편역(2003).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Pauline G. Boss, William J. Doherty, Ralph LaRossa,
Walter R. Schumm, Suzanne K. Steinmetz. 서울: 도서출판하우.
- 유계숙(2008). 가족친화 조직문화가 근로자의 일-가족 조화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7-36.
- 유홍준·박은성·오계택·김월화(2016). 청년층의 취업선호도 변화와 영향 요인.
직접교육연구, 35(1), 1-19.
- 은기수(1999).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건연쇄분석.
한국인구학, 22(2), 47-71.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삼식·최효진(2014). 저출산시대의 일가정양립정책 국제비교 :
OECD국가의 휴가휴직정책 중심. 보건복지포럼. 166, 119-132.
- 이상호·이상현(2010).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금융경제원, 1-35.
- 이윤석·구예리(2008). 미혼 여성들의 직장 경험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인구교육(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1(1), 37-59.
- 이윤정·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 자원이전 : 경제적 자원과
돌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37-151.
- 이은혜(2015).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정책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경·김보화(2015). 2, 30 대 비혼 여성의 결혼 전망과 의미. 학력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1(4), 41 - 85.
- 이정은(2017).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결정요인에 관한 통합적 연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나·황명진 (2018). 미혼남녀의 결혼에 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논총 71, 117-151.
- 임선영·박주희(2014). 미혼자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 제공 요소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177-193.
- 인크루트, 두잇서베이(2017). 결혼 관련 설문 조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 3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정기선 (2009).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통계청. 통계개발원(편). 한국의 사회동향, 48-54.
- 조진영(2016). 30대 미혼성인의 가족주의 가치관, 부모관계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13(1), 59-86.
- 주희정·김민석(2018).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2), 59-88.
- 지혜(2014). 30대, 40대 미혼여성의 생활실태와 결혼의향 비교: 1인 가구와 가족동거가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달래(2013).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관한 연구: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와 결혼장려관련정책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필선·민인식(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57-83.
- 탁현우(2017). 저출산 대책-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지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2017 학술발표논문, 2,013-2,036.

- 통계청(2019). 간이생명표 2019.
- 통계청·여성가족부(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9.
- 통계청(2019). 한국의 사회지표 2018.
- 통계청(2019). 혼인·이혼 통계 2018.
- 통계청(2018). 일·가정 양립 지표 201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한영선(2015). 미혼 취업여성의 일자리 특성과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5(5), 196-215.
- 허창덕(2012).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의거한 장애인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분석. 재활복지, 16(2), 57-80.
- 홍은영(2011).미혼성인의 결혼의향 및 태도와 부모의존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외문헌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Bronfenbrenner .U. & Crouter. A .C. (1983).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Model in Developmental Research*. New York : Willey.

Bronfenbrenner .U.(1995).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S nature and design*.

Thompson, C. A., Beauvais, L. L, & Lyness, K. S. (1999). When work - family benefits are not enough: The influence of work - family culture on benefit utilization, organizational attachment, and work - family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3), 392-415.

OECD(2018). OECD 회원국의 취업자 · 임금근로자 연간근로시간.

<http://stats.oecd.org>.

ABSTRACT

Factors affecting the unmarried office workers' marriage intention

Hwang, In J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unmarried office workers' marriage intentions by applying ecological system theor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personal, parent-related, work-related and policy-related factors in unmarried workers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se factors on their marriage intenti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the basic line data for practical/policy-related methods that can increase marriage intentions of unmarried office workers.

The procedure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Marriage intention was measured by identifying the level of awareness of marriage intention of the subject. Economic resources among personal factors were calculated through monthly income and total capital, while parental factors were measured through housing marriage cost support probability tools, after

the tools were tested for reliability and accuracy. Job satisfaction was measured through a tool used by Hyeyoung Kim, Boyoung Sun and Sangdon Kim (2010) in 'Research on late marriage and low birth rate of females'. Family 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was measured by a selection of 14 questions used in Myojin Bang (2004)'s research from the tool developed by Tomson, Beauvais and Lyness (1999). Need for marriage support policy was measured by Hyeyoung Kim et al. (2010)'s marriage support policy tools and Juhee Park (2017)'s tools combined with policies suggested in 'The 3rd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2016-2020) - Youth employment and living condition improvement'.

The supervisor was consulted to confirm the relevance of the measurement tools, and their reliability and accuracy were proved after the consultation. A pilot test was conducted on 15 unmarried office workers before the main test was conducted.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IBM SPSS 18.0, which calculated descriptive statistics, variance analysis, correlational analysis and hierarchical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marriage intention of unmarried office workers was shown to be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Secondly, personal, parental, work-related and policy-related factors were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marriage intention. In personal factor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in gender, age, duration of education, total capital and presence of debt. In parental factors, parental economic level and housing marriage cost support

possibility were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marriage intention of unmarried office workers. In work-related factors, employment form, job satisfaction and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were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marriage intention, while in policy-related factors, need for housing cost policy and marriage preparation policy were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Thirdly,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have an effect on the marriage intention of unmarried office workers, personal, parental, work-related and policy-related factors were used to conduct a 4-tier hierarchica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in personal factors, gender and ag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arriage intention of unmarried office workers. In parental factors, housing marriage cost support possibility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work-related factors,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marriage intention of unmarried office workers, while in policy-related factors, housing cost policy showed a positive impact while employment policy showed a negative impact. When all the factors were factored into the analysis, and significance of impact was as follows; it was highest in need for housing cost policy, need for employment policy, housing marriage cost support possibility,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gender and total capital. Workers that recognized need for housing policy higher were shown to have higher marriage intentions, while workers that recognized the need for employment policy lower were shown to have higher marriage intentions. In addition, the more the worker recognizes the possibility of their parents supporting housing and marriage

costs, the marriage intentions were higher. The more family friendly the organizational culture was, the higher the marriage intentions were. Also, unmarried male workers had higher marriage intentions than female workers, and workers with lower capital showed higher marriage intentions.

Fourthly, age-dependent and gender-depend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see if the relative strength of the factors show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age and gender. This showed that need for housing cost policy ha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in unmarried male workers, followed by housing marriage cost support possibility, need for employment policy and total capital. Housing marriage cost support possibility was shown to have the highest impact in marriage intentions of unmarried female workers, followed by the need for employment policies and debt. This shows that the factor which has the most significant impact in both male and female unmarried workers was need for housing cost polic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ascertain the relative effect of the factors depending on age showed that in unmarried workers in their 20s, need for housing cost policy ha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followed by need for employment policy, need for marriage preparation policy and debt. In unmarried workers in their 30s, need for housing cost policy ha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followed by housing marriage cost support possibility. This was then followed by the form of employment. In unmarried workers in their 40s, personal, parental, work-related and policy-related factors all failed to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marriage intentions.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need for housing cost policy has the biggest impact on marriage intentions of unmarried office workers. It was also shown that the parents' housing marriage cost support possibility and work's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also have a significant impact. The policies need to take into the accoun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increase the financial and housing support to increase marriage intentions of unmarried workers.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provide quality employment and increase the ratio of permanent workers, so that workers can create a financial basis, which will allow them to become independent of the parents' support when it comes to marriage.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perform age-relevant policies for the less privileged people. It also needs to increase financial support for business and workers to increase the level of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at work.

Key words: marriage intentions, parental support,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need for marriage support policy

II. 다음은 귀하의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정부지원, 자녀의 생활비 지원 등 포함)]은 대략 얼마입니까? () 만원

2. 귀하의 부모님은 귀하에게 주택 자금, 전세자금 또는 결혼비용 등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Ⅲ. 다음은 귀하의 직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V)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 간 그렇 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집안일이나 자녀양육문제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 상사는 내 개인사정과 가정 일에 관심을 갖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회사에서 나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쉽게 조화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개인 사정이나 집안일로 주중에 휴가를 내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회사는 주당 50시간 이상을 일하도록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주말 혹은 밤에도 집에서 직장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월차나 출산휴가 등을 쓸 때 눈치가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도록 회사가 종업원을 배려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우리 회사는 가정일 때문에 내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대신해주도록 지원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내 상사는 내가 업무보다 가정 일을 우선시할 때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내 가족이나 가정에 관한 것을 회사 내에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정시에 퇴근할 수 있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나에게 승진이나 인사 등의 불이익이 미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의 상사는 내가 가정 역할 책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 다음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결혼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V)해 주십시오.

1. 아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입니다. 귀하에게 아래의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 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필요하 다	매우 필요 하다
1	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①	②	③	④	⑤
2	주택자금대출 (디딤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①	②	③	④	⑤
3	신혼부부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청년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 택, 청년 예비부부 전세임대주택	①	②	③	④	⑤
5	근로자 혼례비(결혼자금) 용자	①	②	③	④	⑤
6	결혼준비를 위한 유급 휴가제도	①	②	③	④	⑤
7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가정 고용 환경 조성 (정시퇴근, 근무시간 외 연락 자 제)	①	②	③	④	⑤
8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연가 사용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9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제고 및 창업 활성화 해외 취업 촉진	①	②	③	④	⑤
10	청년이 체감 가능한 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 및 교육·고용 연결 고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11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행복주택 신혼부부 특 화단지 조성)	①	②	③	④	⑤
12	결혼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①	②	③	④	⑤
13	이성 간의 만남의 장 제공	①	②	③	④	⑤
14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V.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V)해 주십시오.

1. 귀하 부모님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 동태 건수 및 동태율 추이 (2000년~2018년, 통계청, 2019.9.24)

항목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출생아수(명)	640,089	559,934	496,911	495,036	476,958	438,707	451,759	496,822	465,892	444,849
사망자수(명)	248,740	243,813	247,524	246,463	246,220	245,874	244,162	246,482	246,113	246,942
자연증가건수(명)	391,349	316,121	249,387	248,573	230,738	192,833	207,597	250,340	219,779	197,907
조출생률(천명당)	13.5	11.7	10.3	10.2	9.8	9.0	9.2	10.1	9.4	9.0
조사망률(천명당)	5.2	5.1	5.1	5.1	5.1	5.1	5.0	5.0	5.0	5.0
자연증가율(천명당)	8.2	6.6	5.2	5.1	4.8	4.0	4.2	5.1	4.4	4.0
합계출산율(명)	1.480	1.309	1.178	1.191	1.164	1.085	1.132	1.259	1.192	1.149
출생성비(명)	110.1	109.0	109.9	108.6	108.2	107.8	107.6	106.2	106.4	106.4
영아사망률(출생아 천명당)	-	5.4	5.1	5.1	4.7	4.2	3.8	3.4	3.4	3.2
혼인건수(건)	332,090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조혼인율(천명당)	7.0	6.7	6.3	6.3	6.4	6.5	6.8	7.0	6.6	6.2
이혼건수(건)	119,455	134,608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조이혼율(천명당)	2.5	2.8	3.0	3.4	2.9	2.6	2.5	2.5	2.4	2.5
기대수명(출생시 기대여명)	76.0	76.5	76.8	77.3	77.8	78.2	78.8	79.2	79.6	80.0
기대수명(출생시 기대여명) - 남	72.3	72.9	73.4	73.8	74.3	74.9	75.4	75.9	76.2	76.7
기대수명(출생시 기대여명) - 여	79.7	80.1	80.3	80.8	81.2	81.6	82.1	82.5	83.0	83.4
항목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생아수(명)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5,435	438,420	406,243	357,771	326,822	
사망자수(명)	255,405	257,396	267,221	266,257	267,692	275,895	280,827	285,534	298,820	
자연증가건수(명)	214,766	213,869	217,329	170,198	167,743	162,525	125,416	72,237	28,002	
조출생률(천명당)	9.4	9.4	9.6	8.6	8.6	8.6	7.9	7.0	6.4	
조사망률(천명당)	5.1	5.1	5.3	5.3	5.3	5.4	5.5	5.6	5.8	
자연증가율(천명당)	4.3	4.3	4.3	3.4	3.3	3.2	2.5	1.4	0.5	
합계출산율(명)	1.226	1.244	1.297	1.187	1.205	1.239	1.172	1.052	0.977	
출생성비(명)	106.9	105.7	105.7	105.3	105.3	105.3	105.0	106.3	105.4	
영아사망률(출생아 천명당)	3.2	3.0	2.9	3.0	3.0	2.7	2.8	2.8	2.8	
혼인건수(건)	326,104	329,087	327,073	322,807	305,507	302,828	281,635	264,455	257,622	
조혼인율(천명당)	6.5	6.6	6.5	6.4	6.0	5.9	5.5	5.2	5.0	
이혼건수(건)	116,858	114,284	114,316	115,292	115,510	109,153	107,328	106,032	108,684	
조이혼율(천명당)	2.3	2.3	2.3	2.3	2.3	2.1	2.1	2.1	2.1	
기대수명(출생시 기대여명)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	
기대수명(출생시 기대여명) - 남	76.8	77.3	77.6	78.1	78.6	79.0	79.3	79.7	-	
기대수명(출생시 기대여명) - 여	83.6	84.0	84.2	84.6	85.0	85.2	85.4	85.7	-	

인구 동태 건수 및 동태율 추이 (1971년~1999년, 통계청, 2019.9.24)

항목	연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출생아수(명)	1,024,773	952,780	965,521	922,823	874,030	796,331	825,339	750,728	862,669	862,835	867,409	848,312	769,155	674,793	655,489
사망자수(명)	237,528	210,071	267,460	248,807	270,657	266,857	249,254	252,298	239,986	277,284	237,481	245,767	254,563	236,445	240,418
자연증가건수(명)	787,245	742,709	698,061	674,016	603,373	529,474	576,085	498,430	622,683	585,551	629,928	602,545	514,592	438,348	415,071
조출생률(천명당)	31.2	28.4	28.3	26.6	24.8	22.2	22.7	20.3	23.0	22.6	22.4	21.6	19.3	16.7	16.1
조사망률(천명당)	7.2	6.3	7.8	7.2	7.7	7.4	6.8	6.8	6.4	7.3	6.1	6.2	6.4	5.9	5.9
자연증가율(천명당)	23.9	22.2	20.5	19.4	17.1	14.8	15.8	13.5	16.6	15.4	16.3	15.3	12.9	10.8	10.2
합계출산율(명)	4.540	4.120	4.070	3.770	3.430	3.000	2.990	2.640	2.900	2.820	2.570	2.390	2.060	1.740	1.660
출생성비(명)	109.0	109.5	104.6	109.4	112.4	110.7	104.2	111.3	106.4	105.3	107.1	106.8	107.3	108.3	109.4
혼인건수(건)	239,457	244,780	259,112	259,604	283,226	285,910	303,156	343,013	353,824	403,031	406,795	387,468	412,984	385,188	384,686
조혼인율(천명당)	7.3	7.3	7.6	7.5	8.0	8.0	8.3	9.3	9.4	10.6	10.5	9.9	10.3	9.5	9.4
이혼건수(건)	11,361	12,188	12,719	14,073	16,453	17,178	20,280	19,734	17,178	23,662	24,278	26,124	28,549	35,772	38,187
조이혼율(천명당)	0.3	0.4	0.4	0.4	0.5	0.5	0.6	0.5	0.5	0.6	0.6	0.7	0.7	0.9	0.9
기대수명(출생시 기대여명)	62.7	63.1	63.5	63.9	64.2	64.6	65.0	65.3	65.6	66.1	66.7	67.2	67.7	68.3	68.9
기대수명(출생시 기대여명) - 남	59.1	59.4	59.7	60.0	60.3	60.6	60.9	61.1	61.4	61.9	62.4	62.9	63.4	64.0	64.6
기대수명(출생시 기대여명) - 여	66.3	66.8	67.3	67.8	68.2	68.6	69.1	69.5	69.9	70.4	70.9	71.5	71.9	72.6	73.2
항목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출생아수(명)	636,019	623,831	633,092	639,431	649,738	709,275	730,678	715,826	721,185	715,020	691,226	675,394	641,594	620,668	
사망자수(명)	239,256	243,504	235,779	236,818	241,616	242,270	236,162	234,257	242,439	242,838	241,149	244,693	245,825	247,734	
자연증가건수(명)	396,763	380,327	397,313	402,613	408,122	467,005	494,516	481,569	478,746	472,182	450,077	430,701	395,769	372,934	
조출생률(천명당)	15.4	15.0	15.1	15.1	15.2	16.4	16.7	16.0	16.0	15.7	15.0	14.5	13.7	13.2	
조사망률(천명당)	5.8	5.9	5.6	5.6	5.6	5.6	5.4	5.2	5.4	5.3	5.2	5.3	5.2	5.3	
자연증가율(천명당)	9.6	9.1	9.5	9.5	9.5	10.8	11.3	10.8	10.6	10.3	9.8	9.3	8.4	7.9	
합계출산율(명)	1.580	1.530	1.550	1.560	1.570	1.710	1.760	1.654	1.656	1.634	1.574	1.537	1.464	1.425	
출생성비(명)	111.7	108.8	113.2	111.8	116.5	112.4	113.6	115.3	115.2	113.2	111.5	108.2	110.1	109.5	
혼인건수(건)	390,229	390,276	410,129	410,708	399,312	416,872	419,774	402,593	393,121	398,484	434,911	388,960	373,500	360,407	
조혼인율(천명당)	9.5	9.4	9.8	9.7	9.3	9.6	9.6	9.0	8.7	8.7	9.4	8.4	8.0	7.6	
이혼건수(건)	39,132	42,268	42,757	44,017	45,694	49,205	53,539	59,313	65,015	68,279	79,895	91,160	116,294	117,449	
조이혼율(천명당)	0.9	1.0	1.0	1.0	1.1	1.1	1.2	1.3	1.4	1.5	1.7	2.0	2.5	2.5	
기대수명(출생시 기대여명)	69.5	70.1	70.7	71.2	71.7	72.2	72.6	73.1	73.5	73.8	74.2	74.7	75.1	75.5	
기대수명(출생시 기대여명) - 남	65.3	65.9	66.5	67.0	67.5	67.9	68.4	68.9	69.3	69.7	70.2	70.7	71.2	71.8	
기대수명(출생시 기대여명) - 여	73.8	74.3	74.8	75.3	75.9	76.4	76.8	77.3	77.7	77.9	78.3	78.7	79.0	79.2	

청년 실업률 (2000년~2018년, 통계청, 2019.3.4)

연도 지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8.1	7.9	7.0	8.0	8.2	8.0	7.9	7.2	7.1	8.0	7.9	7.6	7.5	8.0	9.0	9.1	9.8	9.8	9.5
서울특별시	8.1	8.4	8.2	8.8	8.9	8.9	8.8	7.4	7.6	8.1	8.4	8.3	8.3	8.7	10.4	9.3	10.3	10.1	10.1
부산광역시	12.1	10.7	7.6	9.0	9.9	8.8	8.2	8.3	8.1	9.0	8.9	8.8	8.7	8.8	9.0	9.7	9.9	11.5	9.5
대구광역시	9.1	9.8	9.2	9.8	8.6	8.7	9.5	8.9	8.9	9.8	9.2	8.1	8.0	9.9	11.5	10.1	12.0	11.5	12.2
인천광역시	8.2	8.2	7.9	8.8	8.3	8.3	9.2	8.3	7.7	8.2	8.5	10.0	10.4	9.3	12.1	11.8	11.5	10.5	9.2
광주광역시	12.0	9.4	7.6	10.8	9.5	9.6	10.8	10.0	8.6	7.7	8.6	6.7	7.6	7.4	6.8	7.6	9.8	7.5	8.6
대전광역시	9.3	9.2	7.8	7.0	9.3	9.3	9.3	8.8	7.8	8.3	8.6	8.1	8.9	7.3	7.8	8.9	8.2	7.7	10.5
울산광역시	8.3	7.6	5.0	7.5	8.0	8.0	7.1	6.0	7.4	8.2	7.1	5.7	7.4	6.7	8.0	9.3	11.1	8.5	9.8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	-	-	-	-	-	-	-	7.2	5.9
경기도	6.2	5.8	4.9	7.3	7.6	7.5	6.9	6.5	6.5	8.4	8.3	7.3	6.9	7.3	8.3	9.0	9.8	10.5	9.0
강원도	5.7	4.5	4.8	5.9	6.4	4.9	3.8	6.4	4.6	6.2	5.9	5.1	6.6	7.1	10.3	12.6	10.1	8.0	5.2
충청북도	7.2	7.8	7.2	7.2	8.0	6.5	6.7	7.0	7.0	6.2	5.3	6.3	6.6	6.8	8.8	7.2	6.4	6.5	7.0
충청남도	7.2	8.7	6.9	7.6	6.6	7.5	6.1	5.7	6.3	8.1	6.7	6.3	5.4	8.6	8.4	8.3	8.9	9.8	9.0
전라북도	9.0	9.7	8.3	8.3	9.5	6.9	10.2	6.8	7.6	8.1	7.0	8.2	6.8	6.4	6.3	5.7	9.4	9.3	10.0
전라남도	8.9	8.1	7.3	7.5	8.1	7.3	5.8	5.8	6.9	5.3	6.6	6.8	5.4	7.0	9.5	8.5	10.5	9.7	10.0
경상북도	8.8	7.0	5.8	6.6	7.4	6.7	8.6	6.8	6.6	7.6	6.8	7.7	6.8	10.6	7.7	8.8	10.3	9.5	12.0
경상남도	5.9	6.4	6.0	5.8	5.9	6.4	6.3	6.4	5.7	7.0	6.4	5.9	5.9	5.8	7.0	8.6	8.4	8.6	9.6
제주특별자치도	5.5	5.1	5.5	4.9	6.4	6.0	5.1	5.3	3.9	4.0	5.0	4.5	5.3	5.7	6.0	5.1	5.4	5.7	5.1